

2025 북한인권·종교자유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

2025. 10. 27. (월) 14:00
서울시의회 별관2동 제2대회의실

공동주관



북한인권정보센터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

주최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2025 북한인권·종교자유백서』 발간 세미나

증언에서 책임으로, 기록에서 행동으로

2025.10.27.
오후 2시-4시

서울시의회 별관 2동
제2대회의실(2층)

공동
주관



북한인권정보센터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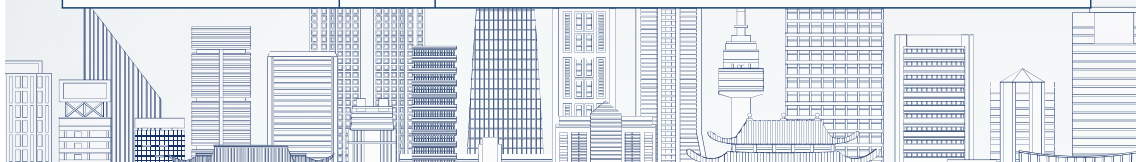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

주최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시간	내용	
13:30 ~ 14:00	등록	
14:00 ~ 14:10	환영사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센터장 황철규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축사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14:10 ~ 14:55 	발제	2025 북한인권백서 주요 데이터·실태 분석 이승엽 NKDB 조사분석팀장
		2025 종교자유백서 주요 데이터·실태 분석 임순희 NKDB 총괄본부장
		현 시점에서의 북한인권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윤승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센터장
14:55 ~ 15:05	휴식	쉬는시간
15:05 ~ 15:35	종합토론	기록과 증언을 넘어 - 북한인권·종교자유 보호를 위한 정책·국제 협력 좌장: 윤여상 NKDB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패널: 강윤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법무관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임창호 장대현교회 담임목사
15:35 ~ 16:00	질의응답	



발 간 사

박종훈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2025 북한인권백서』를 다시 세상에 내놓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중단의 시간을 딛고 재개된 백서 발간의 흐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인권의 현실을 기록하고 그 진실을 세상과 나누겠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매년 발간하는 백서는 단순한 통계나 사례집이 아니라, 북한의 닫힌 사회 속에서 인권침해의 흔적을 찾아내고,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하나의 증언이자 기록의 역사입니다.

『2025 북한인권백서』는 『NKDB 통합인권 DB』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문헌자료, 사진과 영상,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해 축적된 방대한 증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 대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곧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백서에 담긴 한 줄 한 줄의 진술은 누군가의 고통이자, 누군가의 용기이며, 동시에 미래 세대가 마주해야 할 정의의 증거입니다. NKDB는 이러한 증언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축적함으로써, 북한인권침해의 구조적 양상을 분석하고, 향후 정의로운 책임 규명과 피해자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해 NKDB는 북한 내부에서만 아니라 국경 밖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의 실태에도 주목했습니다. 2025년 9월에는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초국가적 억압과 착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며 국제 관계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 현지에서 노동을 강요받는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초국가적 억압 (Transnational Repression)’이라는 개념 아래 새롭게 조명하였습니다. 국가 간 경계를 넘어 확장되는 북한인권침해의 실태를 드러내며, 북한인권 문제가 더 이상 한반도 내부의 사안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임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같은 달 개최된 북한인권박물관 건립 세미나 ‘공간의 부재, 기억의 부재’에서는 북한인권의 진실을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의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NKDB는 지난 2023년 전시관 개관 이후, 기록과 기억, 공감이라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록을 넘어 기억으로, 데이터에서 증언으로, 증언에서 공감으로’라는 이 여정은 북한인권 기록의 사회적 확장을 보여주는 과정이자, 언젠가 북한인권박물관이 그 완성된 형태로 세워지기까지 이어질 우리의 과업입니다.

국제 협력과 연대의 폭도 더욱 넓어졌습니다. 2025년 7월, NKDB는 국제인권연맹(FIDH)과 함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에 북한 관련 공동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4월에는 독일 베를린 하인리히볼재단(독일 녹색당 산하)에서 열린 특별 세미나에 참여해 북한군의 러시아 강제 파병 문제를 국제사회와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는 서울외신기자클럽(SFCC)과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족 송금 문제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여, 북한 당국의 통제와 단절만이 아닌 남한의 무관심이 개인의 존엄성과 가족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지를 알렸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NKDB가 기록기관을 넘어, 국제적 연대의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록에 머물지 않고 기록을 바탕으로 실천적 영역으로 나아간 활동은 법적 구제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2025년 7월 11일,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성폭력과 고문 등 반인도범죄의 피해를 입은 최민경 씨를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에서 태어난 피해자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해 직접 법적 책임을 묻는 최초의 사례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사법적 대응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한 개인의 용기가 만들어낸 인권의 이정표이며, 동시에 NKDB가 지향하는 ‘기록에서 정의로 나아가는 길’의 구체적 실천이기도 합니다.

북한인권의 기록과 교육, 그리고 공감의 확장을 위한 활동 또한 계속되었습니다. 2025년 8월, 북한인권 전시실에서 진행된 〈꿈을 그리다(DOD)〉 전시와 연계하여 “꿈을 그리는 작가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ART TALK” 프로그램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예술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고, 북한인권 문제를 시민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논의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예술과 인권의 만남은 NKDB가 오랜 시간 강조해온 ‘기록의 인간화’와 ‘인권의 일상화’라는 방향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NKDB는 지난 20여 년간의 인권기록 활동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북한 내외에서 겪은 수많은 반인륜적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축적해 왔습니다. 2013년에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에 해당함을 밝히며, 북한 최고지도자뿐 아니라 보위부와 안전부 등 기관의 책임을 국제사회가 물

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야말로, 향후 국제형사 메커니즘과 국내 사법 절차를 통해 책임 규명과 정의 실현의 근거로 기능할 것입니다. 북한의 법제에서도 ‘인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여전히 북한의 통제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헌법 제8조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인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보장된 천부적 권리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이념적 틀 안에서 허용된 제한된 권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북한이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등 국제 인권 메커니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NKDB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확한 기록과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의 백서는, NKDB가 그간 이어온 ‘기록의 여정’이 단순한 데이터의 축적이 아니라 기억과 공감,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기록은 곧 책임이며, 책임은 곧 정의로 이어집니다. 북한인권의 진실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우리의 노력은 언젠가 북한 주민이 자유와 존엄을 회복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 귀중한 증언을 들려주신 북한이탈주민과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 북한인권백서』의 발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송한나 센터장, 임순희 인권본부장, 그리고 연구위원·연구원·조사분석원·인턴·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어

려운 환경 속에서도 NKDB의 사명과 활동을 믿고 지지해 주신 임원
진과 후원자 여러분의 응원에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5. 10. 27.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박 종 훈

개 회 사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 센터장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북한인권의 현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각계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 후원자 여러분, 오늘 『2025 북한인권백서』 & 『2025 북한 종교자유백서』 발간 세미나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서울시의회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의회의 관심과 협력은 북한인권 문제를 공적 담론의 장으로 이끌고,

서울이 북한인권의 기록과 연대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003년 설립 이래 지난 20여 년간 북한의 폐쇄된 체제 속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의 실태를 기록하고 분석해 왔습니다. 2007년 첫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한 이후, 매년 축적된 자료와 증언을 통해 북한 사회의 닫힌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해왔습니다.

NKDB의 백서는 단순한 통계나 사례집이 아니라, 북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과 용기를 담은 증언의 역사이자, 그 자체로 정의와 책임을 향한 기록의 여정입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곧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 아래, NKDB는 진실의 조각들을 모아 북한인권침해의 구조적 양상을 드러내고자 해왔습니다.

올해 백서에는 북한 내부의 인권침해뿐 아니라, 국경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초국가적 억압(Transnational Repression)의 실태 또한 담았습니다. NKDB는 2025년 9월 「북러관계 변화와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의 인권」 세미나를 개최하고,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초국가적 억압과 착취」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이 해외 노동자들의 생명과 자유를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이 연구는 북한인권 문제가 더 이상 한반도 내부의 사안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록에 머물지 않고 기록을 정의 실현의 수단으로 확장하는 일 또한 NKDB가 올해 거둔 중요한 성과 중 하나입니다. 지난 7월,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성폭력과 고문 등 반인도 범죄의 피해를 입은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를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북한에서 태어난 피해자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해 직접 법적 책임을 묻는 역사적인 첫 사례로, 국내외 사법적 대응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용기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뒤에는 수년간의 기록과 분석을 이어온 NKDB의 축적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NKDB의 기록은 단순한 증언을 넘어, ‘기록에서 정의로 나아가는 길’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NKDB는 기록을 기억으로, 데이터에서 증언으로, 증언에서 공감으로 확장시키는 ‘기록의 사회적 여정’ 또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인권 전시관 개관에 이어, 올해는 북한인권의 진실을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즉 ‘북한인권박물관’ 건립을 위한 논의와 준비를 본격화하였습니다. ‘공간의 부재, 기억의 부재’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북한인권의 진실을 사회가 기억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의 필요성을 환기시켰습니다. NKDB는 언젠가 북한인권박물관이 완성된 형태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기록과 기억, 공감이 만나는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NKDB는 국제인권연맹(FIDH)과 공동으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에 북한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고, 독일 베를린 하인리히볼재단에서 열린 특별 세미나에서는 북한군의 러시아 강제파병 문제를 국제사회와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외신기자클럽(SFCC)과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족 송금 실태를 발표하여 북한 당국의 통제가 개인의 존엄성과 가족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지를 알렸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NKDB가 기록기관을 넘어 국제적 연대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NKDB의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카이브가 아닙니다. 기록은 곧 책임이며, 책임은 곧 정의로 이어집니다. 오늘 발간되는 『2025 북한인권백서』와 『2025 북한 종교자유백서』는 북한인권의 현실을 증언하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책임과 정의, 그리고 변화로 나아가는 하나의 발걸음입니다.

이 백서에 담긴 수많은 증언과 데이터는 언젠가 북한 주민이 자유와 존엄을 회복하는 그날, 정의 실현의 근거로 기능할 것입니다. NKDB는 앞으로도 진실을 기록하고 세상과 나누는 사명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기록을 통해 행동하고, 행동을 통해 정의를 세우는 길에 국제사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귀중한 증언을 들려주신 북한이탈주민과 피해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백서의 발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님, 연구진, 조사분석팀, 인턴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NKDB의 사명과 활동을 믿고 지지해 주신 이사님들, 후원자, 그리고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27.

북한인권정보센터 센터장 송 한 나

개 회 사



황철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성동4선거구 황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와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증언에서 책임으로, 기록에서 행동으로”라는 주제처럼, 북한인권 개선의 여정을 ‘기록’의 차원을 넘어 실천과 책임의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북한인권백서와 종교자유백서는 단순한 통계나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 책에는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와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며, ‘기록’은 곧 기억이고, 기억은 정의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통계로만 남지 않고 인류 보편의 인권 가치로 승화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11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히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제북송, 종교박해, 구금시설 내 고문과 공개처형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록이 행동으로, 증언이 책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논의와 피해자 지원 체계의 실질적 가동, 그리고 법적·정책적 대응의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인권의식 확산,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서울이 ‘인권의 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기록해온 북한인권 정보센터 송한나 센터장님과 연구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각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중한 증언을 들려주신 북한이탈주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논의가 “기록에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서울시의회 역시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실현하는 확고한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2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황 철 규

축 사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호정입니다.

2025 북한인권백서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북한인권백서는 자유를 위해 사선을 넘은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으로 만들어진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특히 올해 백서에는 ‘증언에서 책임으로, 기록에서 행동으로’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현실을 알리는 차원을 넘어 그들의 고통을 멈추게 하기 위한 우리의 책임과 행동,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백서 발간을 기념해 마련된 이 세미나에서 가장 정의롭고, 실질적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최악으로 치닫는 북한주민 인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코자 귀중한 기록물을 완성해 주신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의 박종훈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연대의 공론장을 마련해주신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25 북한인권백서가 증언하듯, 북한의 참혹한 인권탄압은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새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의 수 역시, 수백명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이는 더 이상 북한인권에 침묵해선 안 된다는 현실을 역설합니다. 북한 인권은 ‘누군가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입니다.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25 북한인권백서가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자,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춧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서울시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북한인권 증진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는 공동의 과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27.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 호 정

축 사



이종환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한 서울, 행복한 서울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이종환 의원입니다.

‘2025년 북한인권백서’, ‘2025 종교자유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주요 내·외빈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백서와 종교자유백서에 대해 발제해주실 전문가 여러분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미나를 주관하신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시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신 황철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종교자유 문제 실태를 국내외 알리는 등 정책적·사법적 대응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강제 북송 등 피해자 지원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북한인권백서와 종교자유백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과 종교 문제에 대한 실태 분석과 북한 인권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종교자유 보호를 위한 정책·국제협력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정확한 사실을 담아내고 있어 국내·외에 그 심각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사안들은 국제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 북송 문제는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이를 방지하고 근절하는 것은 우리 모두 공동의 책임입니다.

북한 내 잔혹한 인권 유린에 대해 국제법과 인권 규범에 기반한 실질적인 대응이 시급한 만큼, 이 자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높이고, 학계, 시민사회, 국제기구, 언론이 함께 공동의 연대와 실천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북한인권 신장과 종교 자유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이어가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5. 10. 27.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이 종 환

축사



이성배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성배입니다.

『북한 인권백서 및 종교자유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황철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시간을 내어 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북한인권백서와 종교자유백서의 발간은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현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국제사회가 그들의 고통을 마주하도록 하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간 축적된 방대한 조사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북한 인권침해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사법적 대응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최근 강제북송 문제, 북한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논의, 종교의 자유 침해와 같은 현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도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양심이 응답해야 할 과제이며,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서울시의회도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평화가 뿌리내린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국제적 연대의 출발점이 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정의의 이름으로 제도와 법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세미나가 학계, 시민사회, 국제기구, 언론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북한 인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꾸준한 기록과 헌신이 바로 정의 구현의 초석이자, 자유와 인권이 실현되는 미래를 여는 힘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 성 배

축 사



장태용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장태용입니다.

『2025 북한인권·종교자유백서』발간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런 뜻깊은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발제 및 토론을 해주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이승엽 조사분석팀장님, 임순희 총괄본부장님, 윤승현 인권침해지원센터 센터장님,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님, 강윤주 서울유엔인권사무소 법무관님,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님, 임창호 장대현교회 담임목사님 등 여러 전문가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유엔 COI 보고서(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mmission on Inquiry)가 지적했듯이, 북한은 외부 정보 차단과 감시 체계를 강화하며 인권 탄압을 심화시키고 있어, 여전히 북한 인권 실태는 우리 사회는 물론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북한의 인권, 종교 자유의 실태 분석과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고, 정책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앞으로도 북한 인권과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모든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 증진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27.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장 태 용

축사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

「2025 북한인권·종교자유 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황철규 시의원님, 그리고 북한인권정보센터 박종훈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해 온 북한의 인권 현실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강제 노동과 감시 체계 확대, 외부 정보 접촉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인권침해의 문제는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 증언 청취, 법적 구제 방안 마련, 국제협력 논의 등 다방면에서 헌신해 오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오늘 세미나가 더욱 의미 있는 자리 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북한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회

북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인권과 자유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며, 국가나 체제의 차이를 넘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입니다. 오늘 논의가 그 가치를 되새기고, 북한 주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인권의 존중과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연대를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증언에서 책임으로 기록에서 행동으로

Session 1 14:00-14:10

2025 북한인권백서 주요 데이터·실태 분석
이승엽 NKDB 조사분석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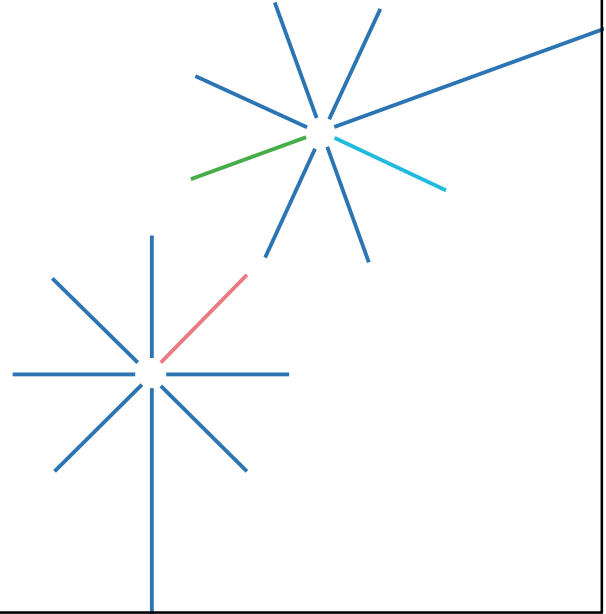
2025 종교자유백서 주요 데이터·실태 분석
임순희 NKDB 총괄본부장/선임연구위원

현 시점에서의 북한인권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윤승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센터장



「2025 북한인권백서」 주요 데이터 · 실태 분석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분석팀장 이승엽



「2025북한인권백서」 주요 데이터·실태 분석

「2025 북한인권백서」 주요 데이터·실태 분석

01
통합DB

02
사건-지역

03
사건-시기

04
인물

05
맺음말



『NKDB 통합인권 DB』

북한인권정보센터 SINCE 2003

사건 데이터

88696

인물 데이터

57440

총 누적 데이터

146136

『NKDB 통합인권 DB』는 누적 데이터로, 시기별 비교 및 특정 주제의 변화 설명에 용이

2024년 6월 30일 대비 사건 1,379건(1.6%▲), 인물 988건(1.8%▲)
네번째로 작았던 수집 총량 적은 시기(2004년 39건, 2005년 1,371건, 2020년 1,899건)

최근 탈북민 수의 감소와 북한 내부 접근성 악화로 인한 감소세
기록할 수 있는 통로의 한계

『NKDB 통합인권 DB』, 2025년 6월 30일 기준

『NKDB 통합인권 DB』

북한인권정보센터 SINCE 2003

사건 판단 기준

① 처벌 내용이 북한 법을 위반한 경우

② 행위에 비해 처벌이 과도한 경우

③ 정치범죄·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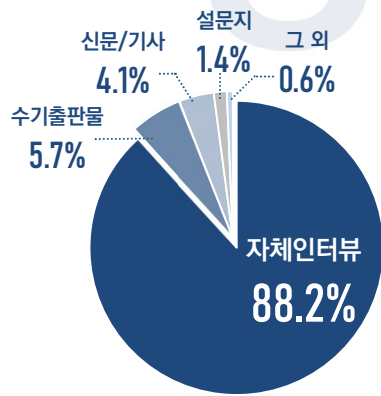
④ 국제인권규범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인권법 취지인 ‘피해자 보호 원칙’ 중심
포괄적 범주에서 북한의 반인권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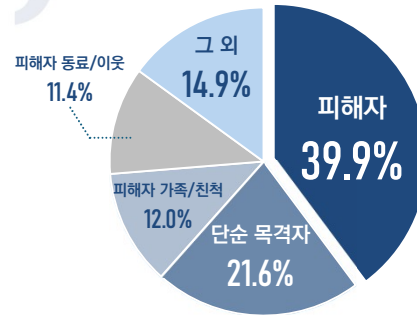
『NKDB 통합인권 DB』 - 사건

사건 자료 출처



■ 자체인터뷰 ■ 수기/출판물 ■ 신문/발행기사 ■ 설문지 ■ 그 외
*그 외: 편지, TV, 라디오, 번역된 문서, 기타

정보 제공자



■ 피해자 ■ 목격자 ■ 피해자 가족/친척 ■ 피해자 이웃/동료 ■ 그 외
*그 외: 가해자, 가해자 동료, 가해자 친척, 기타

『NKDB 통합인권 DB』 - 사건

사건 분류 유형

88696

16
권리유형

생명권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
이주 및 주거권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재생산권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집회 및 결사권
재산권
정치적 참여권
노동권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외국인의 권리
기타

85
침해유형

1. 생명권 침해
2.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3. 생존권 침해
4. 건강권 침해
5. 교육권 침해
6. 이주 및 주거권 침해
7.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침해
8. 재생산권 침해
9.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10. 집회 및 결사권 침해
11. 재산권 침해
12. 정치적 참여권 침해
13. 노동권 침해
14.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침해
15. 외국인의 권리 침해
16.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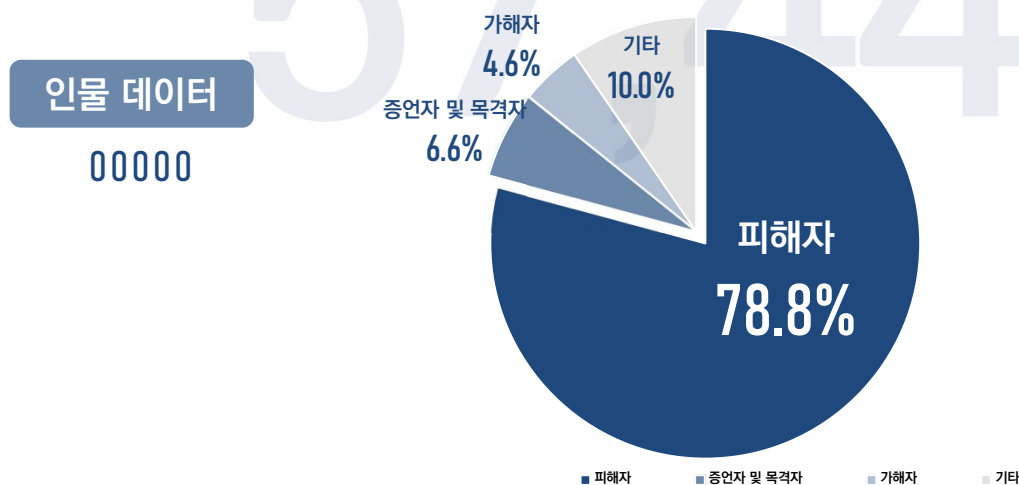
104
세부 침해유형

1. 생명권 침해
2.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3. 생존권 침해
4. 건강권 침해
5. 교육권 침해
6. 이주 및 주거권 침해
7.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침해
8. 재생산권 침해
9.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10. 집회 및 결사권 침해
11. 재산권 침해
12. 정치적 참여권 침해
13. 노동권 침해
14.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침해
15. 외국인의 권리 침해
16. 기타

219
도구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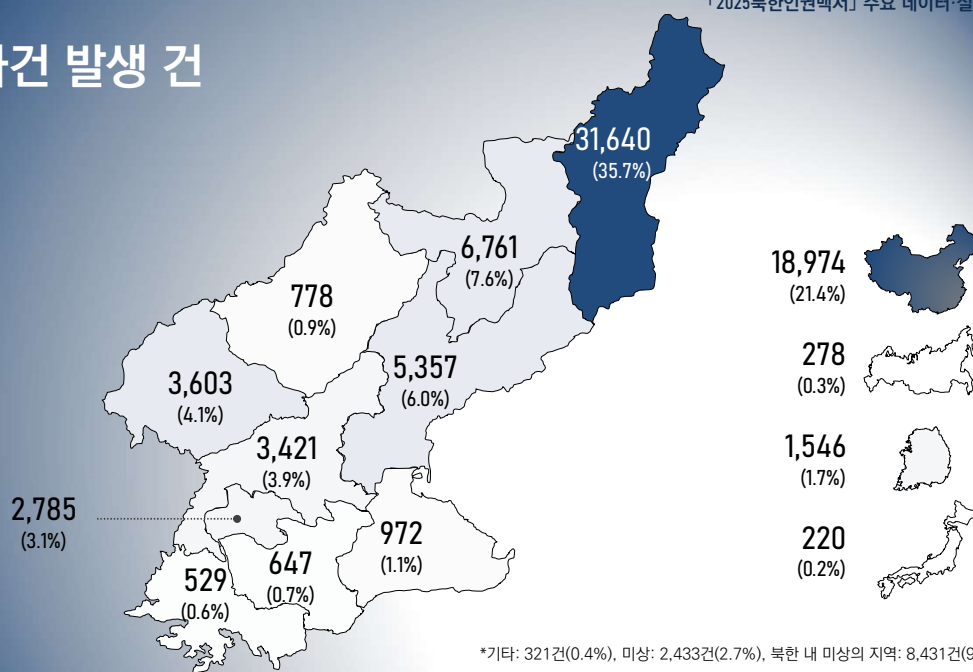
1. 생명권 침해
2.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3. 생존권 침해
4. 건강권 침해
5. 교육권 침해
6. 이주 및 주거권 침해
7.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침해
8. 재생산권 침해
9.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10. 집회 및 결사권 침해
11. 재산권 침해
12. 정치적 참여권 침해
13. 노동권 침해
14.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침해
15. 외국인의 권리 침해
16. 기타

『NKDB 통합인권 DB』 -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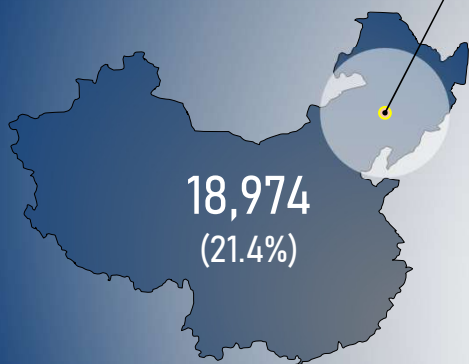
*기타: 개별 사건에서 역할이 없는 인물이나, 구금 및 조사시설 경험자 등 사건에 대한 정보 파악에 유의미한 인물

지역별 사건 발생 건



지역별 사건 발생 건

중국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및 인신매매
관련 인권침해 사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중국에서 발생한 주요 인권침해

- ①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10,397건(54.8%)
- 강제매춘 및 인신매매: 4,549건
- ② 이주 및 주거권: 8,247건(43.5%)
- 강제송환: 8,243건

지역별 사건 발생 건

함경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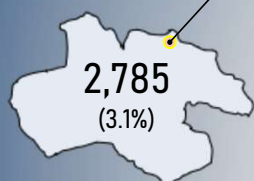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출신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
내륙지역의 북한주민도 탈북 시 거쳐가는
주요 지역으로 인권침해 사건이 많이 보고

- ①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20,345건(64.3%)
- 불법구금: 15,057건
- ② 생명권: 4,048건(12.8%)
- 사법적 집행: 2,581건

지역별 사건 발생 건

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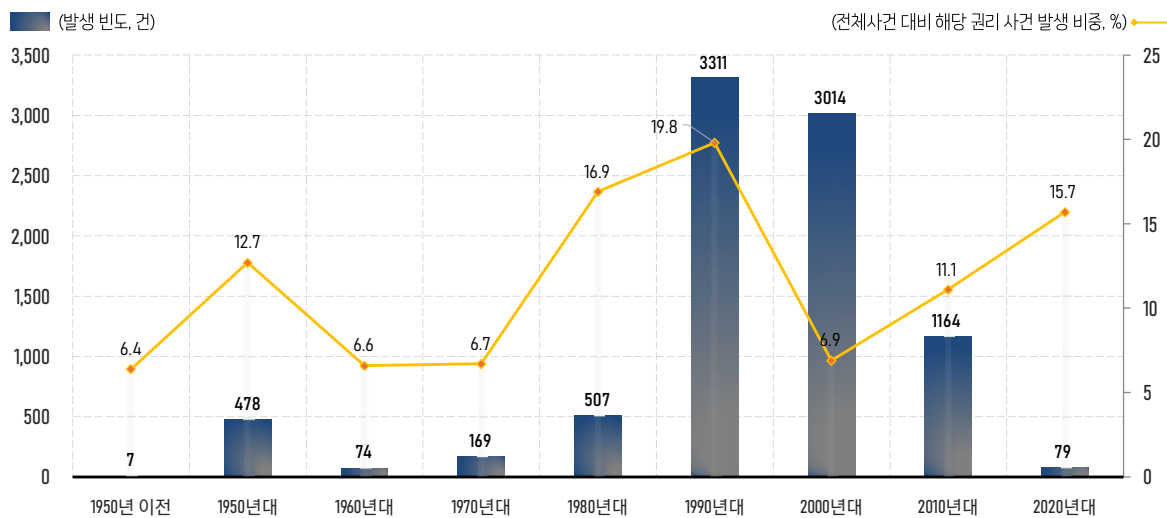
정치적 환경에 따른
강제이주 및 숙청이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 ① 이주 및 주거권: 1,028건(36.9%)
- 국내추방(강제이주): 1,013건
- ②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776건(27.9%)
- 불법구금: 348건
- ③ 생명권: 343건(12.3%)
- 사법적 집행: 255건

사건 권리유형 및 시기별 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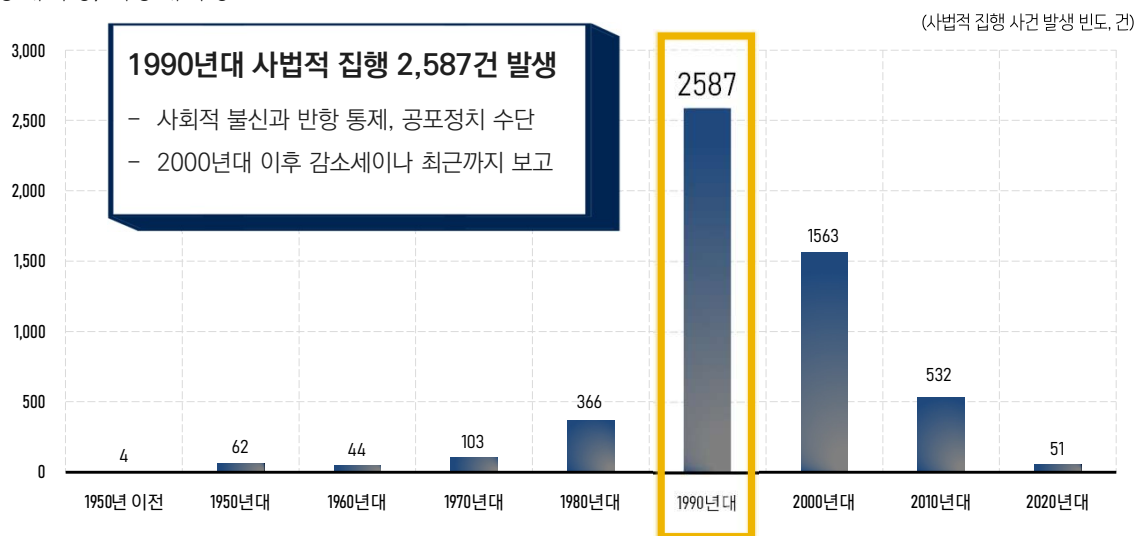


생명권 침해 사건 시기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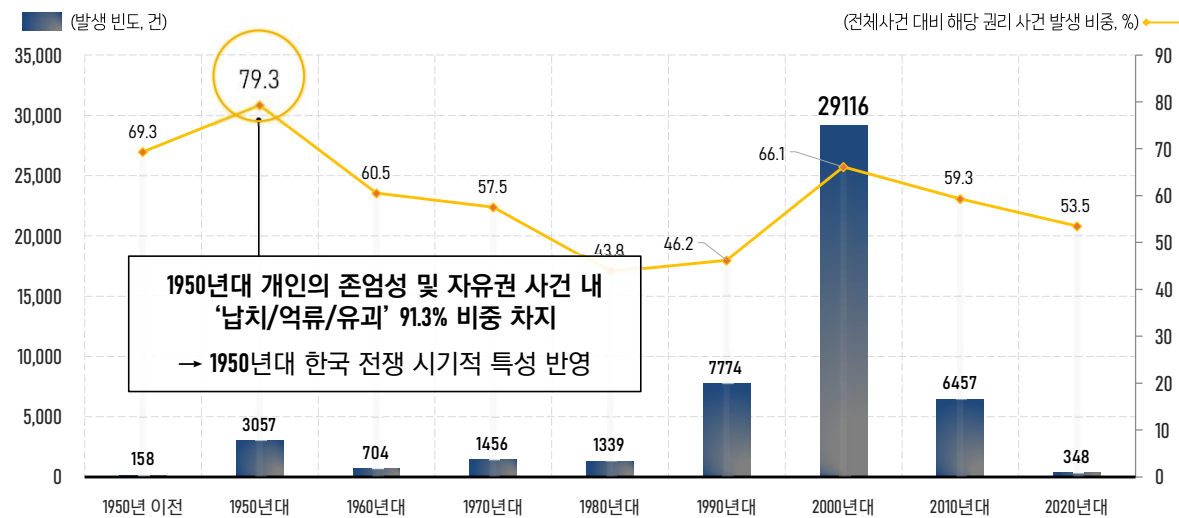


사법적 집행 사건 시기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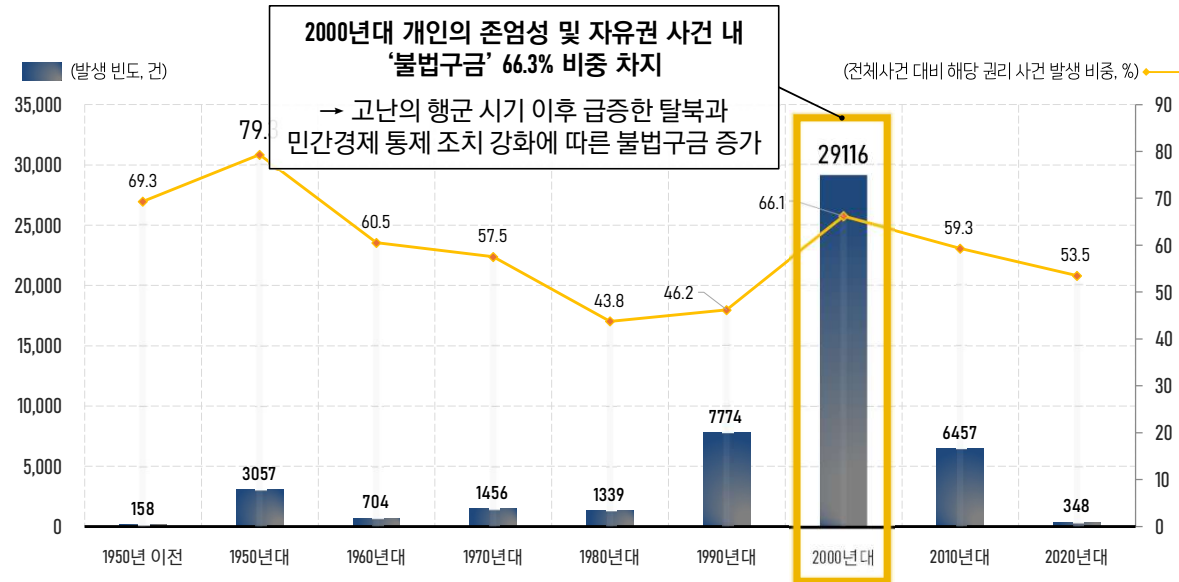
공개처형/비공개처형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사건 시기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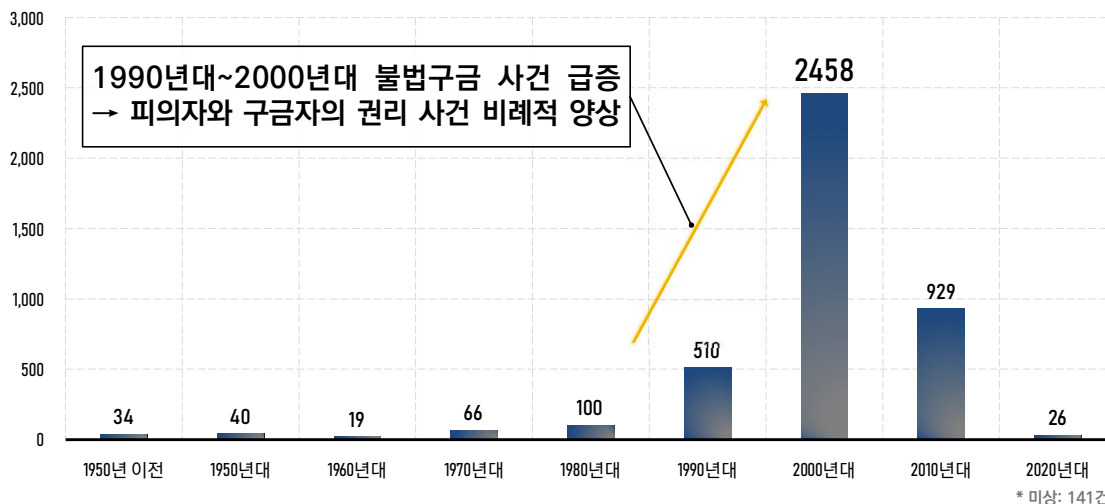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사건 시기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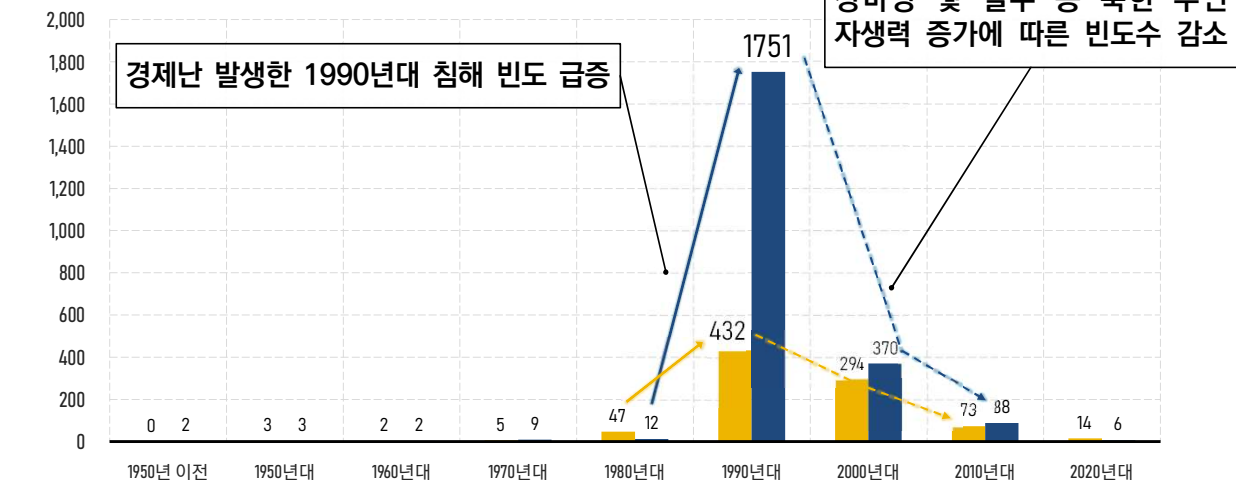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침해 사건 시기별 발생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침해 사건 발생 빈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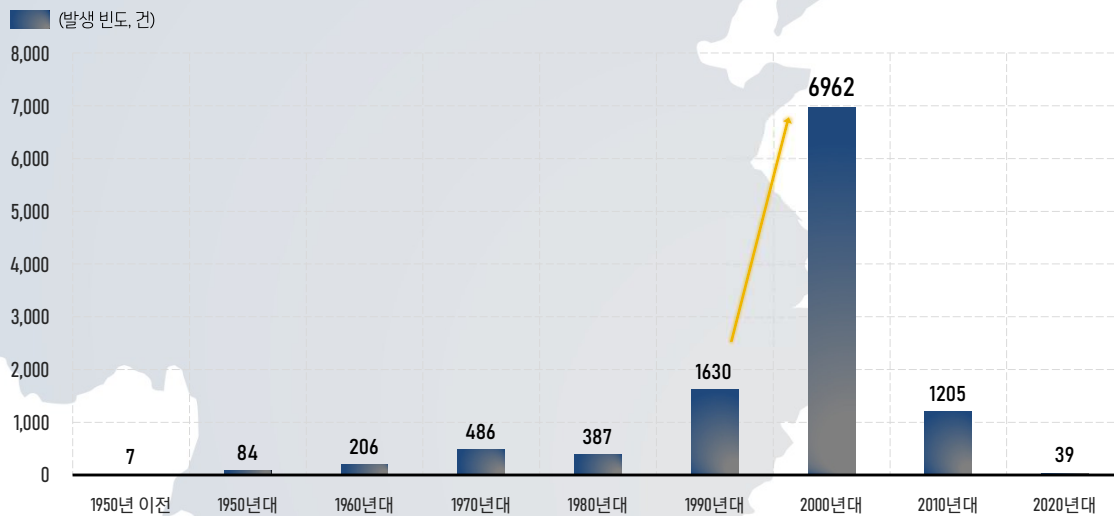


생존권 / 건강권 침해 사건 시기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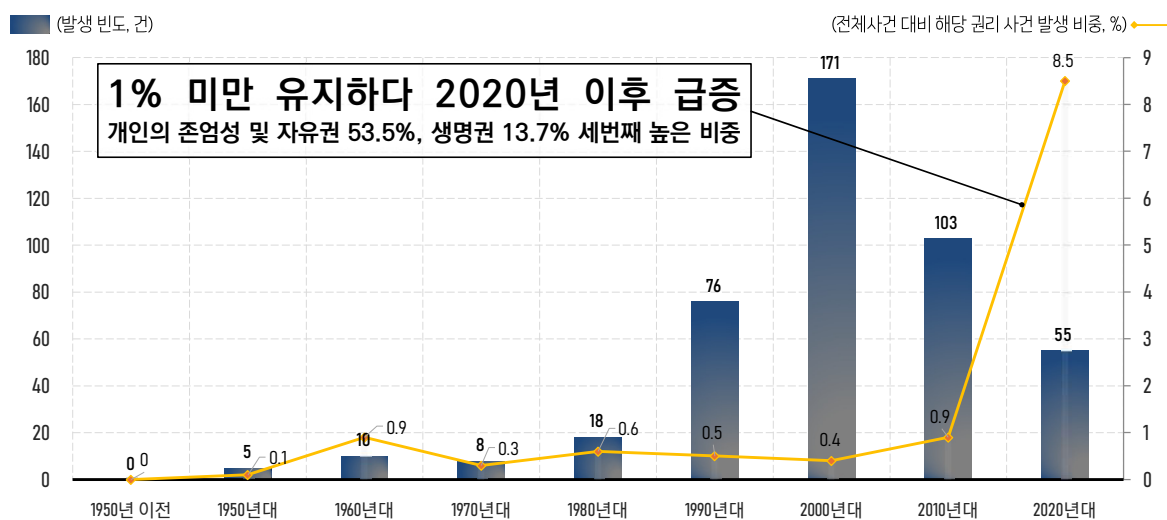
(발생 빈도, 건)



이주 및 주거권 사건 시기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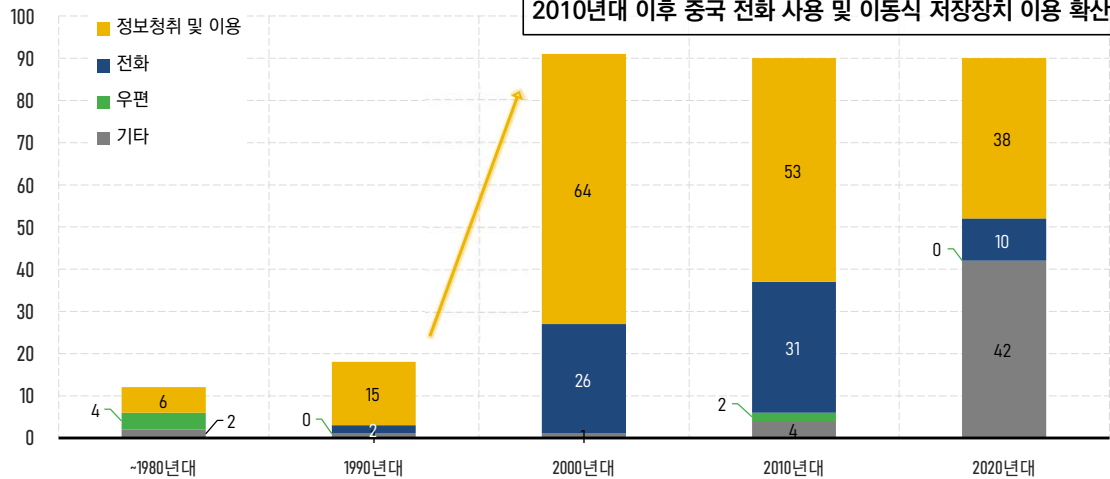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사건 시기별 발생



통신 및 정보 이용 제한 사건 시기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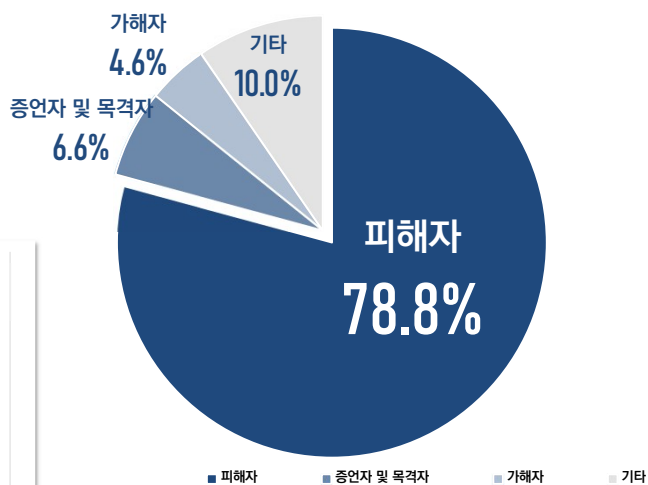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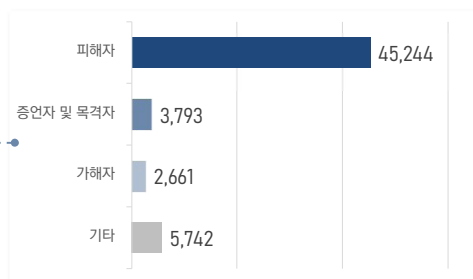
우편, 전화, 정보청취 및 이용, 기타

(발생 빈도, 건)



인물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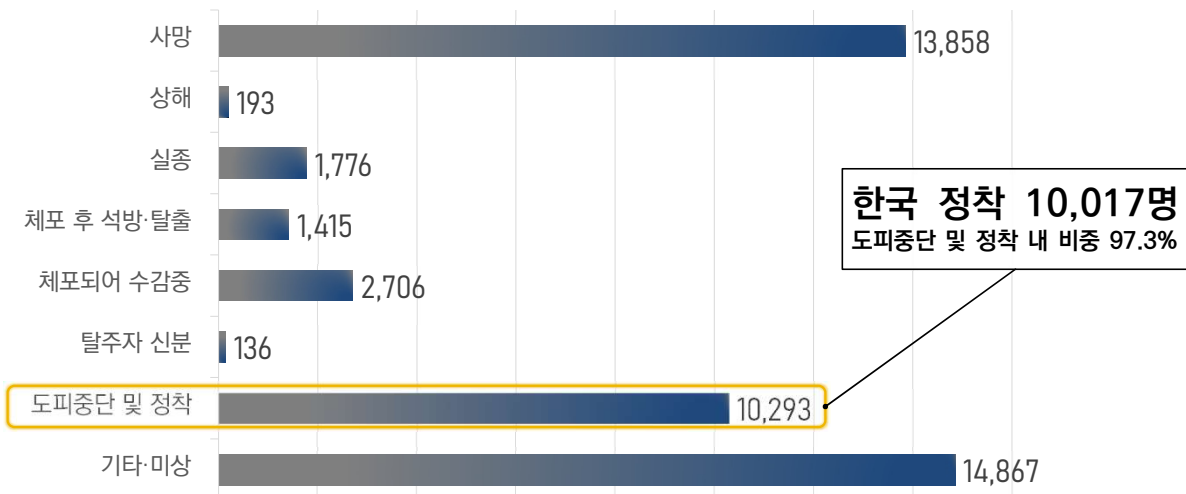
인물 데이터



*기타: 개별 사건에서 역할이 없는 인물이나, 구금 및 조사시설 경험자 등 사건에 대한 정보 파악에 유의미한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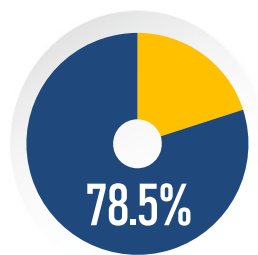
피해자 상태

조사시점 / 증언자의 최근 확인 시점 기준



가해자 유형

가해자로 분류된 2,661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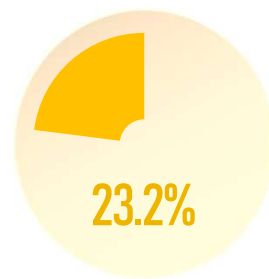


정부기관 2,088건 (78.5%)
개인 569건 (21.4%)

* 기타: 4건(0.2%)



정부기관 2,088건 중
보위부 및 안전부 1,34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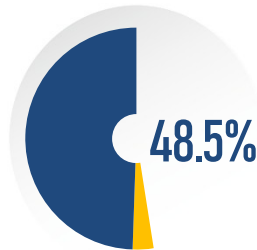


개인 517건 중
직장·선생·모임·동료 61건
당비서·관리원·상사 59건

가해자 직위 유지 및 개입 방식

가해자 2,661건 중 직위 유지 여부 및 처벌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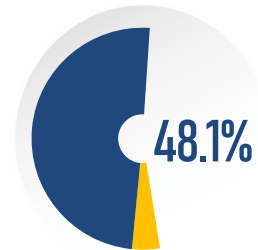
직위 유지 여부



직위유지 1,291건 (48.5%)
박탈·해고·강등 90건 (3.4%)

* 기타 254건(9.5%)
미상 1,026건(38.6%)

처벌 여부



처벌받지 않음 1,280건 (48.1%)
처벌 받음 107건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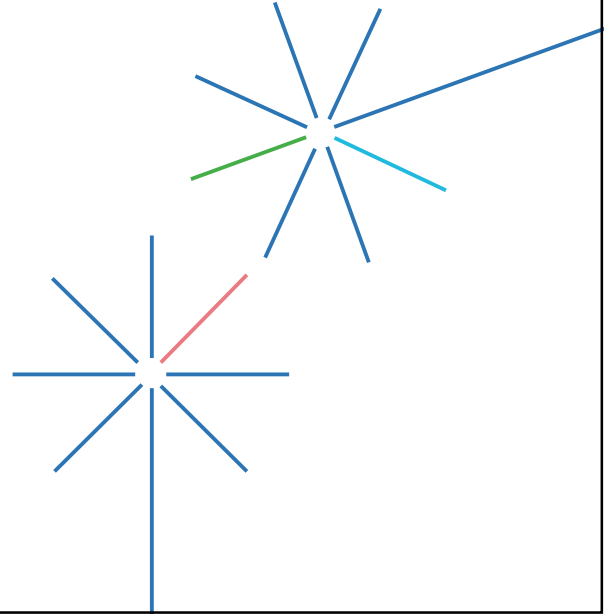
* 기타 143건(5.4%)
미상 1,131건(41.4%)

1 4 6 1 3 6

「2025 종교자유백서」 주요 데이터 · 실태 분석

북한인권정보센터 선임연구위원 임순희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7년 11월 14일 설립된 민간단체입니다.



목차

1. 종교백서 발간 목적과 방법론
2. 종교의 자유 정의
3. 북한의 종교 자유 수준
4. 북한의 종교박해 실태
5. 주요 결과 및 제언

종교의 자유 정의

세계인권 선언 18조

Article 18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개인적으로 혹은 타인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사적 혹은 공적으로 선교, 교육, 예배 그리고 종교의식을 통해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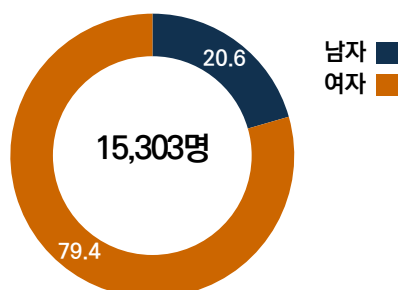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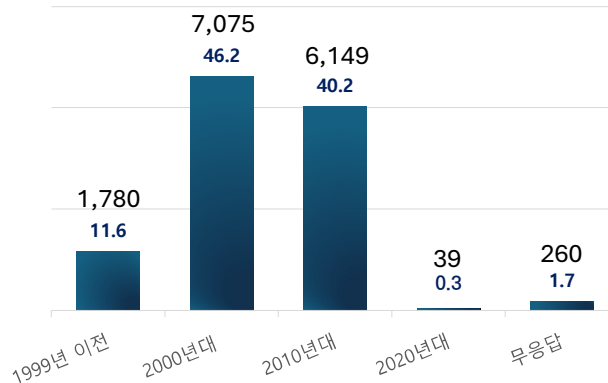
북한의 종교 자유 수준

조사 대상자 기초정보

● 조사 응답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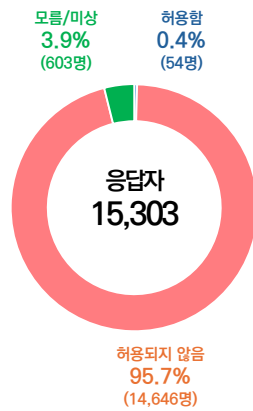


● 조사 응답자 탈북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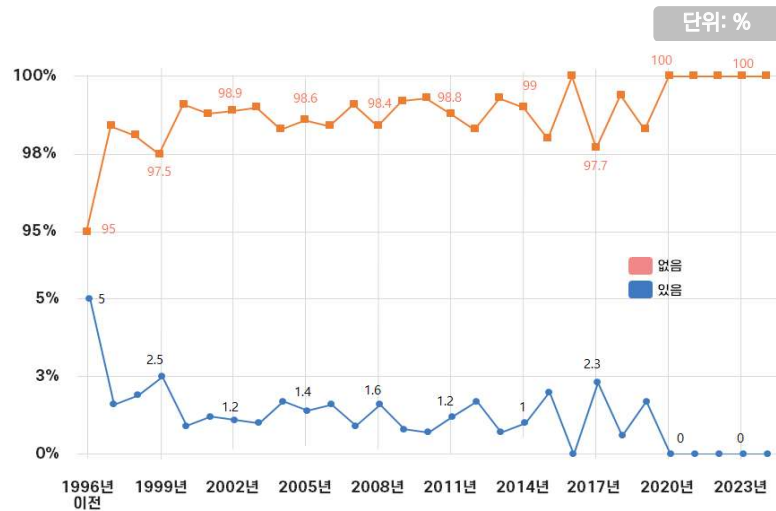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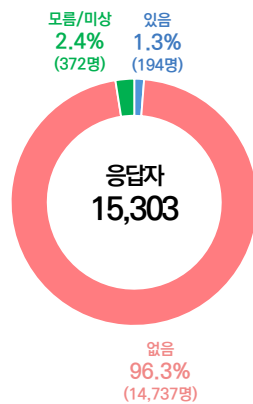
북한의 종교 자유 수준

● 북한에서 자유롭게 종교활동 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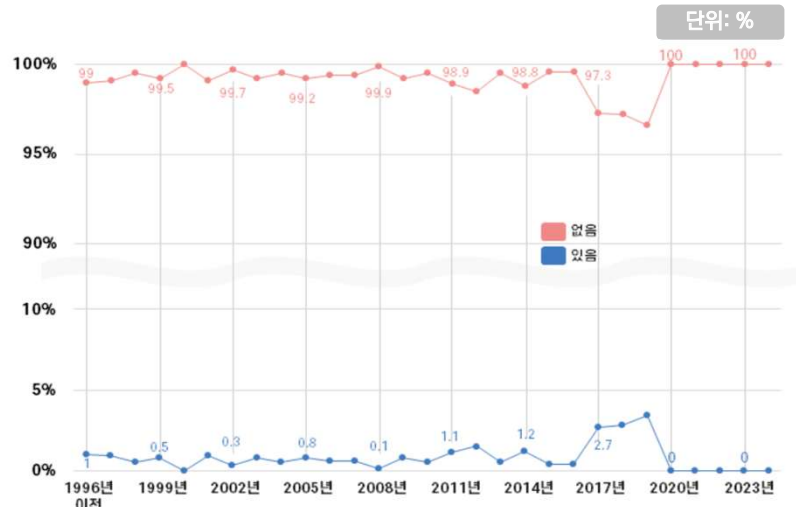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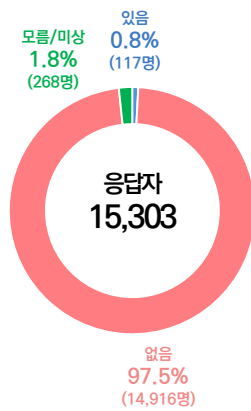
북한의 종교 자유 수준

● 평양 이외에 합법적인 가정예배 처소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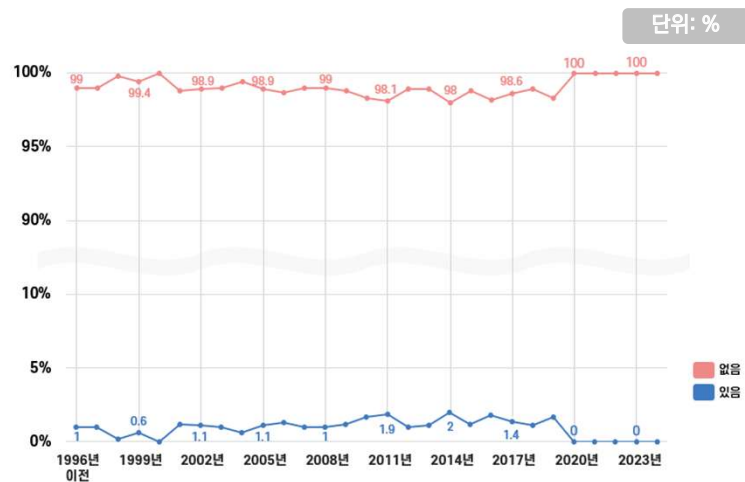
북한의 종교 자유 수준

● 종교시설에 합법적으로 방문한 경험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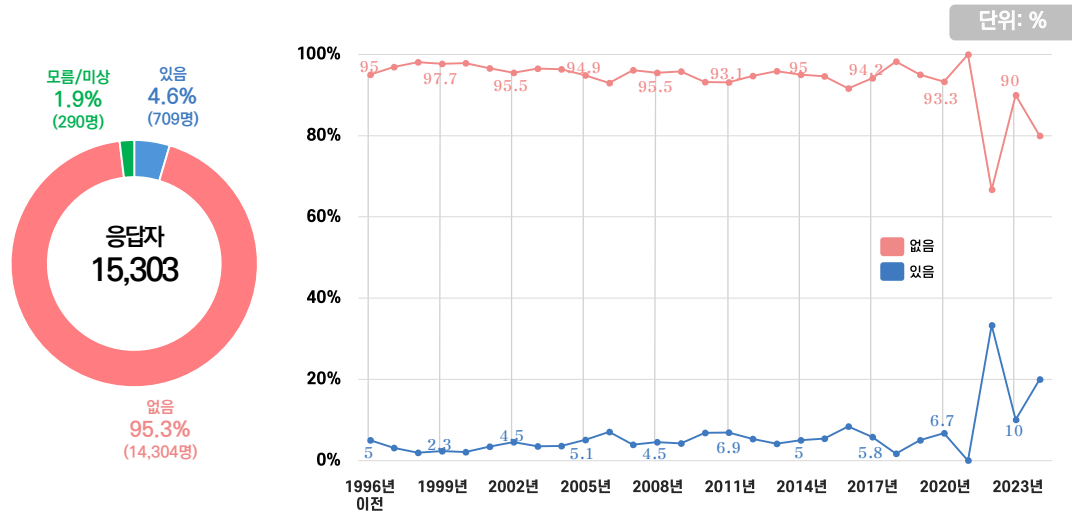
북한의 종교 자유 수준

● 비밀리에 종교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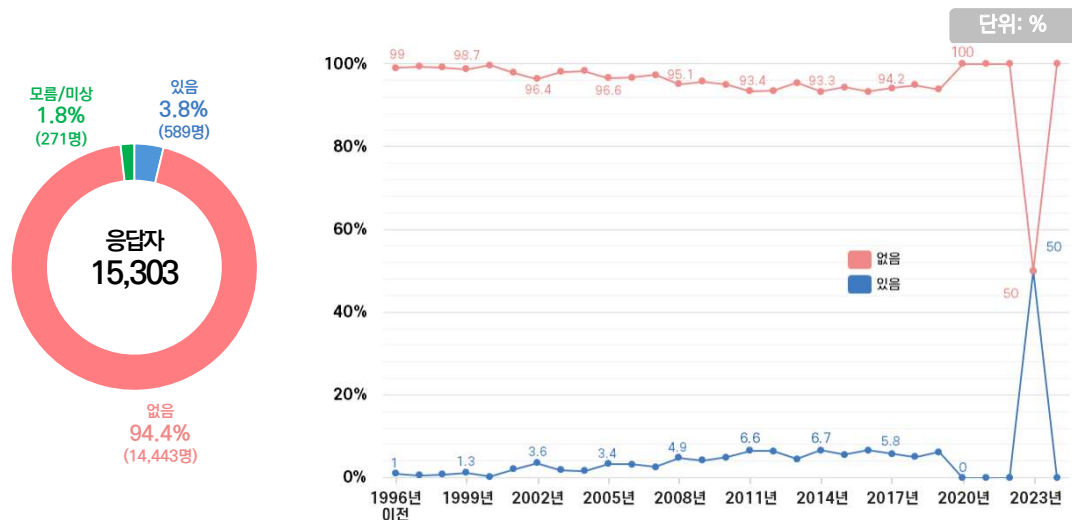
북한의 종교 자유 수준

● 타인의 비밀 종교활동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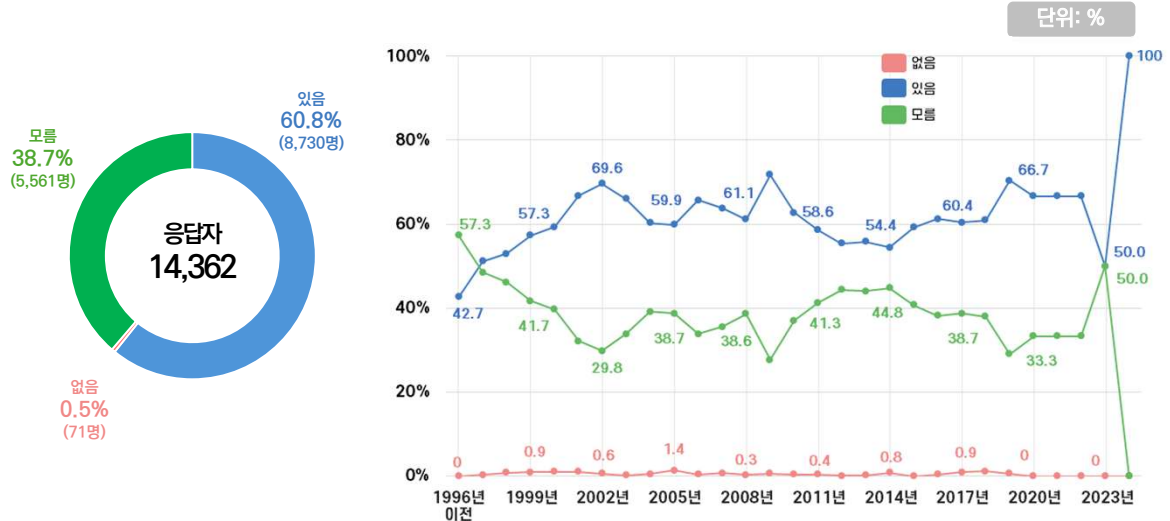
북한의 종교 자유 수준

● 성경과 같은 종교물품을 본 경험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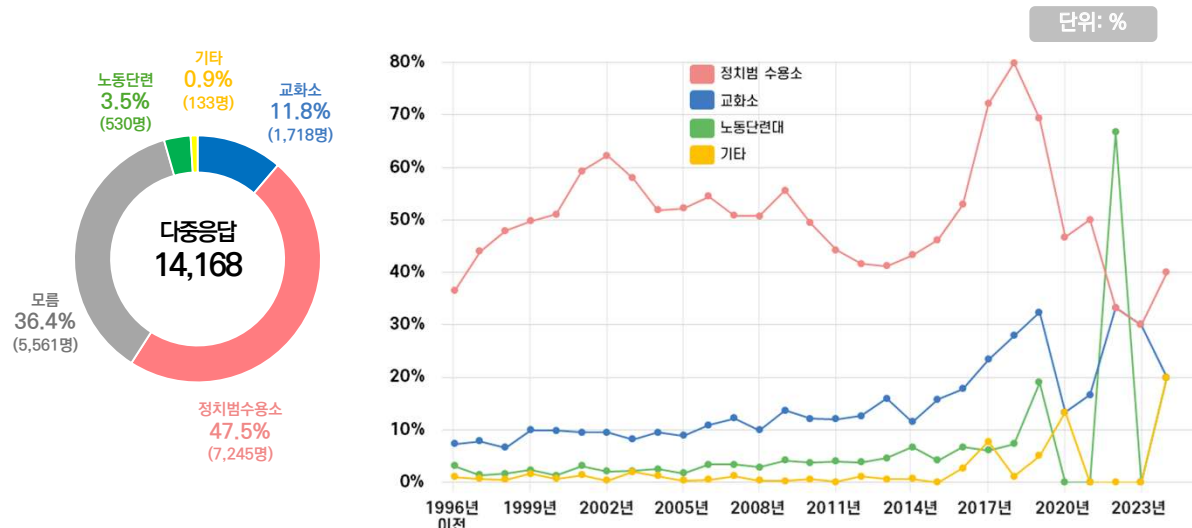
북한의 종교 자유 수준

●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하면 처벌받는가?



북한의 종교 자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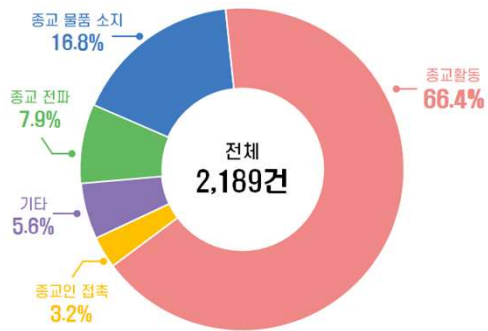
●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하면 어떤 처벌받는가?



북한의 종교박해 실태

북한 종교박해 기초정보

● 종교박해 유형



● 종교박해 세부 유형에 따른 정보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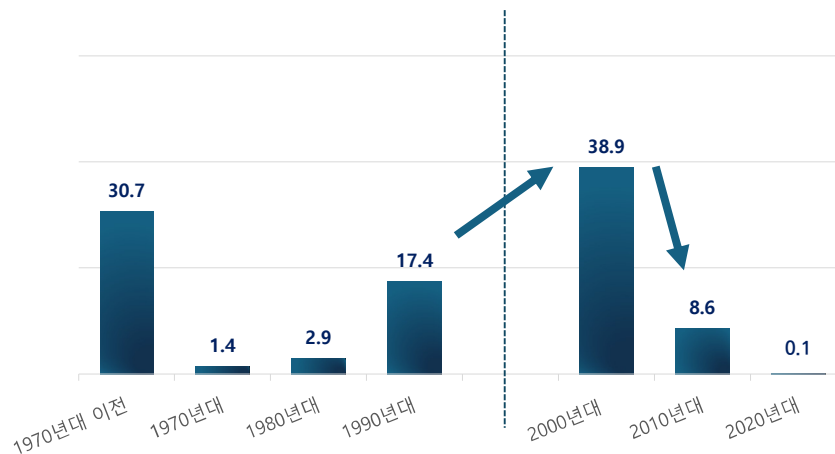
단위: 건/%

유형	목적	경험	득문	증언자의 확산	합계
종교전파	83 (47.7%)	23 (13.2%)	68 (39.1%)	-	174 (100.0)
종교물품소지	179 (48.6%)	13 (3.5%)	176 (47.8%)	-	368 (100.0)
종교활동	440 (30.3%)	97 (6.7%)	912 (62.8%)	4 (0.3%)	1,453 (100.0)
종교인접촉	28 (39.4%)	18 (25.4%)	24 (33.8%)	1 (1.4%)	71 (100.0)
기타	75 (61.0%)	8 (6.5%)	40 (32.5%)	-	123 (100.0)
합계	805 (36.8%)	159 (7.3%)	1,220 (55.7%)	5 (0.2%)	2,189 (100.0)

북한의 종교박해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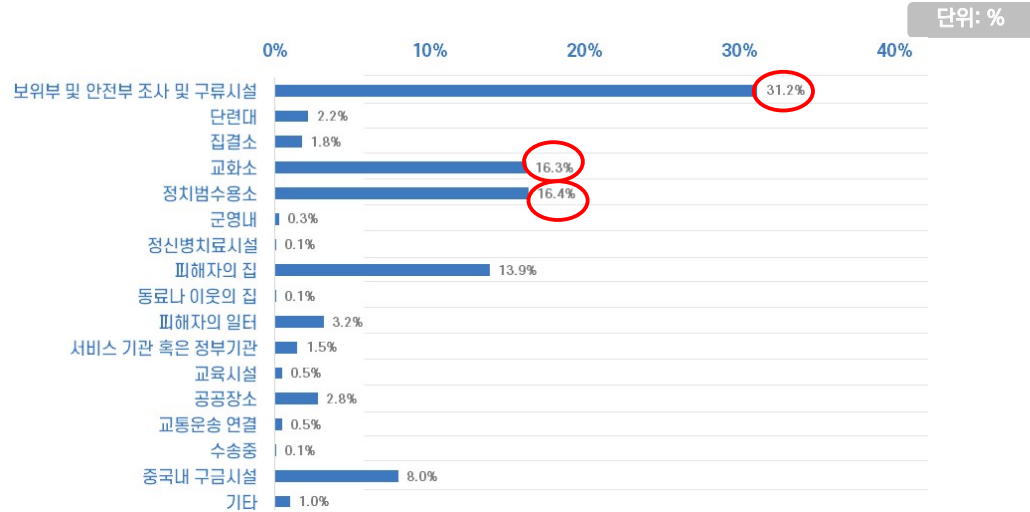
● 종교박해 사건 시기별 발생 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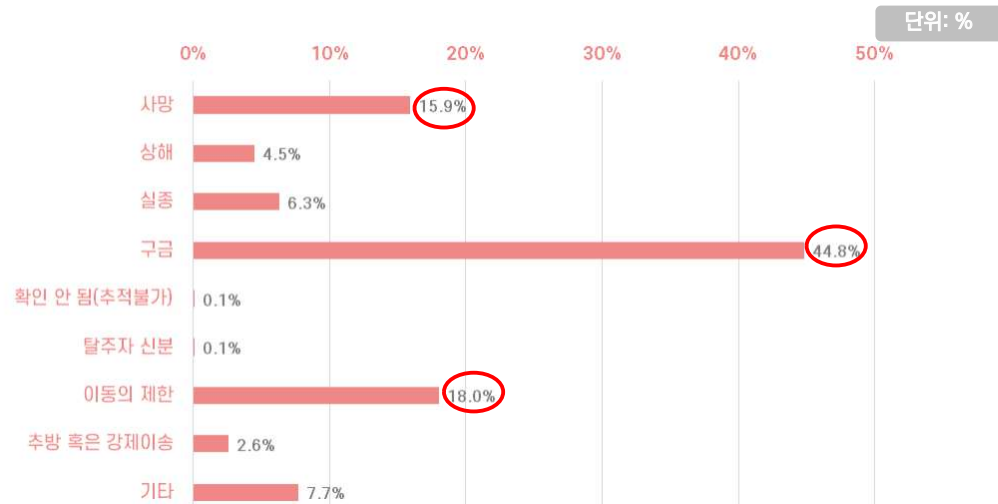
북한의 종교박해 실태

● 종교박해 사건 장소별 발생 건



북한의 종교박해 실태

● 종교박해 사건 피해 수준



북한의 종교박해 실태

○ 코로나 이후 종교탄압 관련 법과 내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중신고법

제15조 (신고할 내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음과 같은 범죄 및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0. 불량행위, 음탕한 행위, **미신행위**, 매음행위, 도박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추기거나 조건을 보장하여주는 행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23조 (성록화물 시청, 재현, 미신전파 금지)

공민은 색정영화, 색정사진, 성록화물과 **미신을 설교한** 출판물, 전물을 시청, 류포하거나 재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청년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살인, 강도, 강간을 비롯한 강력범죄행위
2. 성불량행위, 음탕한 행위, 매음행위, 도박행위
3. **종교와 미신행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반조직운영법

제20조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투쟁)

인민반장은 반원들속에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깊이 해설하고 인민반안에 건전하고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 강력범죄와 **미신행위**, 장사행위, 불량행위를 비롯한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 결과 및 제언

○ 주요 결과

북한 당국의 변화없는 태도

- 자유로운 종교활동 불가
- 합법적인 가정 예배처소 운영 등의 관한 내용 지속 추적 필요



종교활동 위축

- 국경경비 강화로 기존 종교활동 경험자, 종교물품 유입 차단
- 종교활동 시 처벌 강화한 다양한 법 제정



지속되는 종교박해

- 구금, 실종 등과 인권피해 추정
- 추가 표본 확보하여 지속 모니터링 필요



비공개 종교활동

- 비공개 종교활동을 하였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자 존재
- 2020년대에도 목격되어 지속 추적 필요



새로운 정보 부족

- 북한의 국경경비 강화 및 폐쇄
- 중국 내 감시와 처벌 강화
- 코로나 이후 입국자 급감



주요 결과 및 제언

● 제언

북한 당국의 변화없는 태도

- 북한 선교, 북한 종교자유를 위한 새로운 방법과 시도
-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



종교자유 실태 모니터링

- 국제인권규약 활용
- 북한 당국에게 종교 관련 투명한 정보 요구



정보 유입과 안전한 전달방안 모색

- 종교 관련 자료 지속 제공
- Do No Harm 원칙 준수



국제사회 대화 및 압박

- 안보-인권 현안 연계
- 중립국을 통한 대화



북한인권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구제와 앞으로의 과제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센터장
윤승현 변호사(법무법인 창)



I. 북한 및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Rights to Remedy
NKDB인권침해지원센터

헌법 제3조(영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근거 규정

헌법 제4조(평화통일정책)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남북교류협력법 등의 헌법적 근거 규정



I. 북한 및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

대법원 2008.7.4.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나 동시에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1993.7.29. 선고 92헌바48 결정 :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점에 비추어, 헌법 제4조가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전자를 위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후자를 위하여는 국가보안법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I. 북한 및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

대법원 1996.11.20. 선고 96누1221 판결 :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을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은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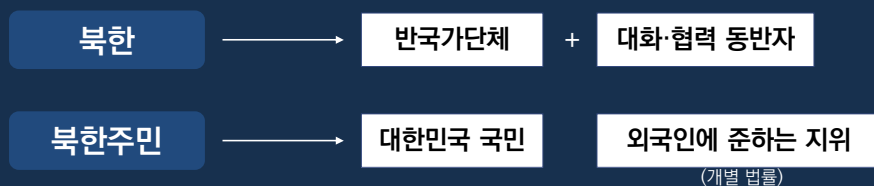
I. 북한 및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재판소 2006.6.30. 선고 2003헌바114 :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제3조)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므로, 북한을 법 소정의 “외국”으로, 북한의 주민 또는 법인 등을 “비거주자”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참조).



I. 북한 및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



북한인권 피해자, 국내 사법기관에 민형사상 사법적 구제 청구 가능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면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북한주민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개별 법률에서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음.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북한인권 피해자도 국내 사법기관에 민·형사상의 사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



II. 북한인권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구제

북한인권 피해자

북한 당국에 의해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하는 모든 기본적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 및 그 유가족

국내 법원 민사소송 사례

- 가. 국군포로 출신 탈북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 나. 전시 납북자 가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 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및 부상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 라. 서해 피격 공무원 가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 마. 북송재일교포 탈북민(국내거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
- 바. 북한이탈주민(북한출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해외 법원 민사소송 사례

- 가.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오토 월비어 사건
- 나. 일본 법원에서 진행 중인 북송재일교포 (일본거주) 사건

II. 북한인권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구제 – 주요 쟁점

주권면제이론
적용 여부

북한의
당사자 능력
문제

재판관할권
및
토지관할법원

송달 문제
(공시송달)

강제집행 문제
(추심금 소송)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2024년 9월 12일, 북송재일교포 5인을 대리하여 북한을 상대로 거짓 선전과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승소하였다.

II. 북한인권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구제 – 주요 쟁점

송달 문제 (공시송달)

- 기존 북한 상대 민사소송은 모두 공시송달을 통해서 승소판결을 받음.
- 국내 법원에서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외국 소재 북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없음.
- 북송재일교포 탈북민(국내거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뉴욕 소재 북한 유엔대표부를 송달장소로 지정하여 법원에 송달을 요청함(민소법 제191조).
- 이에 대하여 법원은 “북한은 외국이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민소법 제191조(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를 적용할 수 없고, 민소법 제194조의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었으며, 가장 유사한 송달 관련 법률 규정인 북한이탈주민법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제4항을 유추적용하더라도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로 처리함.
- 이와 같은 법원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북한출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뉴욕 소재 북한 유엔대표부를 송달장소로 지정하여 재차 송달을 요청함.



II. 북한인권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구제 – 주요 쟁점

강제집행 문제 (추심금 소송)

- 국내 법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공시송달을 통해 받은 승소판결을 근거로 북한을 채무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자발적으로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 재단을 피고로 하여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비법인사단으로 보기 어렵고, 가사 비법인사단으로 보더라도 피고(경문협)에 대한 직접적인 저작물사용료채권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상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2건의 추심금 청구소송이 계류 중임(대법원 2023다237361, 2024다223802)



III. 북한인권 피해자에 대한 형사적 구제 - ICC 제소 가능성

: 가해자인 북한 최고위층에 대한 형사소추 가능성

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 임무는 북한에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조사
- 북한의 인권탄압상황을 반인도적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규정
- 정치적 견해가 다른 집단을 북한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광범위하게 몰살하는 폴리티사이드(politicide), 즉 정치적 학살(political genocide)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봄
- 이 보고서는 북한의 반인도범죄는 현대사회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으며 이는 북한정부의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밝힘



III. 북한인권 피해자에 대한 형사적 구제 - ICC 제소 가능성

: 가해자인 북한 최고위층에 대한 형사소추 가능성

나. 한국과 로마규정

- 1998년 채택된 로마규정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집단학살죄,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할권 행사 가능
- 우리나라는 2002년 로마규정을 비준하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이행법률로 제정함(2007년 발효)



III. 북한인권 피해자에 대한 형사적 구제 - ICC 제소 가능성

: 가해자인 북한 최고위층에 대한 형사소추 가능성

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권 행사 요건

-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근거인 로마규정 비준국이어야 함 (북한은 로마규정을 비준하지 않은 비가입국임)
- 로마규정 비가입국이라고 하더라도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결정한 경우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ICC 회부 가능성 희박)
- 로마규정 비가입국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을 인정할 경우(북한이 자발적으로 ICC 관할권 인정할 가능성 없음)
- 따라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북한 최고위층을 반인도범죄로 재판할 가능성을 거의 없음.
다만, 국제법전문가 '모스 단' 리버티대학 법대학장은 한국 헌법이 북한을 자국 영토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이 로마규정 가입국이므로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함.

III. 북한인권 피해자에 대한 형사적 구제 - 국내 제소 가능성

: 가해자인 북한 최고위층에 대한 형사소추 가능성

가. 북한 당국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고발사건 :

2020.4.16. 14:46경 개성공업지구 내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에 대하여 김여정(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과 박정천(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총참모장)을 폭발물사용죄, 공익건조물파괴죄로 고발함

→ 현재 고발인 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음.

III. 북한인권 피해자에 대한 형사적 구제 - 국내 제소 가능성

: 가해자인 북한 최고위층에 대한 형사소추 가능성

가. 북한 당국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례

북한이탈주민의 반인도범죄 고소사건 관련 :

2025. 7. 11. 북한이탈주민(북한출신) 이 탈북과정에 있었던 반인도범죄에 대하여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인도에 반한 죄) 혐의로 북한 최고위층 및 보위부장, 보안서장, 집결소장 및 실제 행위가담자들을 고소한 사건임

→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도 없이 각하결정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임.



III. 북한인권 피해자에 대한 형사적 구제 - 국내 제소 가능성

: 가해자인 북한 최고위층에 대한 형사소추 가능성

나. 국내 법원 형사재판 사례 (*가해자인 피고인이 탈북하여 대한민국에서 거주함)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46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

피고인은 1956년생으로 2000년대 초 북한의 탄광지대 작업소에서 근무하며 작업소를 탈출하려는 노동자들을 단속하는 보위부 일을 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탈북해 한국 국적을 얻은 뒤 중국에 머물던 피해자가 딸을 탈북시키기 위해 북한 주민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알게 됨.

이에 피고인은 2006.4. 중순경 “딸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약속장소로 나오게 한 뒤 2차레에 걸쳐 보위부로 넘기려 했지만,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으면서 약속, 유인은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고, 이후 피고인은 북한 내에서 한국 영화를 시청하고 중국제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돼 수감되었다가 중형에 처해질 것이란 말을 듣고 2006.12.경 검찰소를 탈출하여 두만강을 건너 탈북하였으며, 2007년 남한에 입국하여 귀순하였으나, 귀순 뒤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가전 제품 제조회사 등에서 일하며 사기대출 등 범죄를 저질러 2013.12. 구속 기소된 후 1심에서 사기 및 약취, 유인 미수로 유기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됨.



III. 북한인권 피해자에 대한 형사적 구제 - 국내 제소 가능성

: 가해자인 북한 최고위층에 대한 형사소추 가능성

나. 국내 법원 형사재판 사례

(*가해자인 피고인이 탈북하여 대한민국에서 거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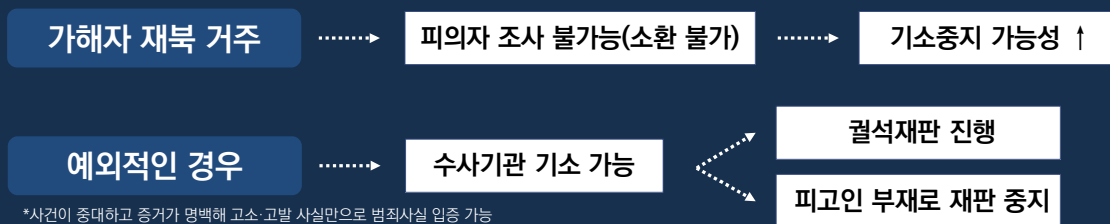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623 폭행 등 사건(피고인은 2016. 4. 탈북 후 입국):

피고인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14. 9.경 허락없이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는 폭행을 가하였고, 2015. 6. 초순경 중국 요녕성 심양시 소재 호텔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왼쪽 귀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가슴과 배 부분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으며, 2015. 6. 중순경 중국 소재 위 식당 종업원 숙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넘어뜨리고 발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으며, 2015. 7. 초순경 위 식당 뒷문에서 피해자가 다른 종업원과 싸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목 부분을 잡아 조르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고 벽에 수차례 부딪히게 하고,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됨



III. 북한인권 피해자에 대한 형사적 구제 - 국내 형사절차 한계

: 가해자인 북한 최고위층에 대한 형사소추 가능성



북한 인권 피해자의 가해자들(특히 북한 최고위층 및 간부들)이 대부분 북한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또는 고발인 조사는 진행할 수 있으나, 피의자 조사가 불가능(소환불가)하여 대부분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됨. 예외적으로, 사건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백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 조사만으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 조사 없이 기소할 수는 있음. 이 경우 현행법상 결석재판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형사소송법 제277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제277조의2 구속된 피고인의 출석 거부와 공판절차,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1심 공판의 특례) 이외에는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할 수 없으므로 재판절차가 중지됨.



IV. 결론: 현재 실정과 향후 과제

북한인권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현재 실정

국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을 통해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으나, 국내에 북한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곤란함.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 대한 추심금 청구소송은 대법원 계류 중

북한 인권 가해자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형사고소(고발)를 통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북한 인권 가해자 중 최고층이나 간부들은 대부분 북한에 있어 반인도범죄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하더라도 실제 형사소추나 형사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움.

IV. 결론: 현재 실정과 향후 과제

북한 인권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에 대한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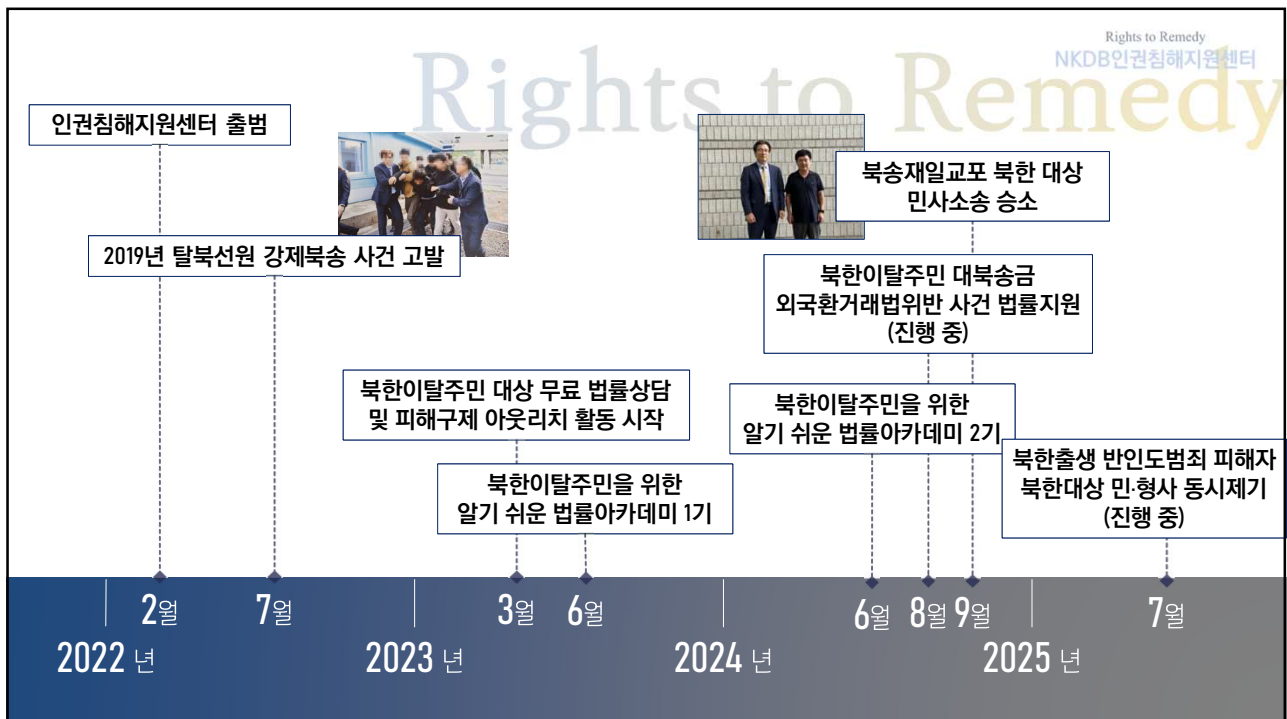
법리적으로는 북한 인권 가해자(특히 북한 최고위층 및 간부들)에 대하여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국내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청됨.

특히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인도에 반한 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사법당국에서 사건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백한 경우, 피고소인(피고발인)에 대한 조사 없이도 기소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함.

국내 민사재판에서도 북한 유엔대표부 등에 대한 송달을 적극 추진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북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대법원에 계속 중인 추심금 소송의 경우에도 북한의 전체주의 통치체제의 실상을 반영하여 추심금 청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함.

감사합니다.

Rights to Remedy
NKDB인권침해지원센터



증언에서 책임으로 기록에서 행동으로

Session 2 15:05-15:35

종합토론

: 기록과 증언을 넘어

-북한인권·종교자유 보호를 위한 정책 ·국제 협력

좌장: 윤여상 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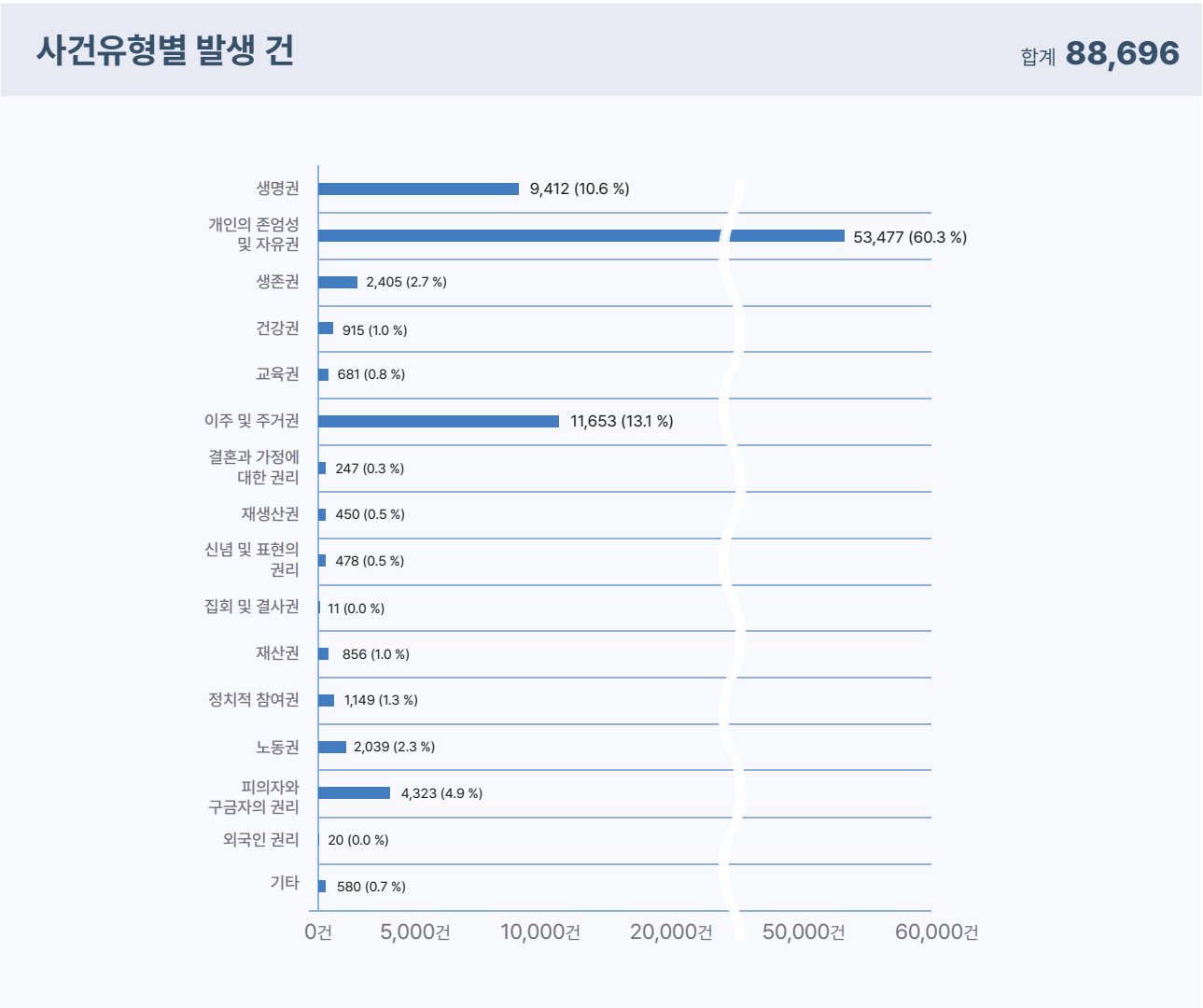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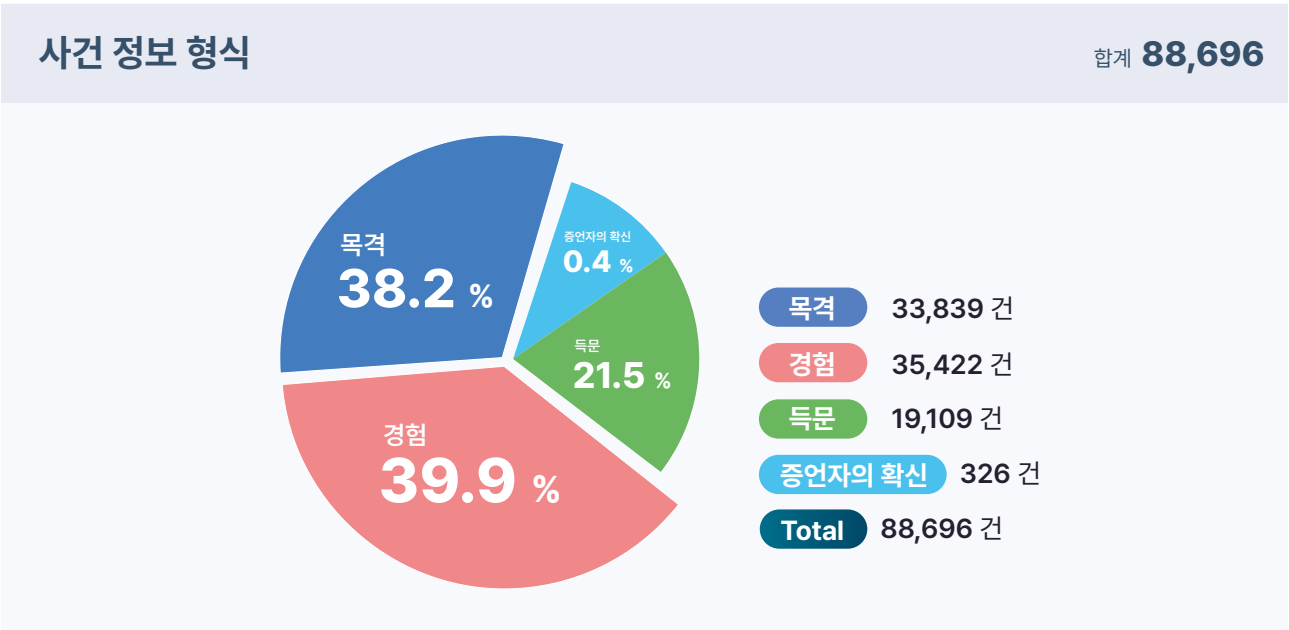
패널: 강윤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법무관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임창호 장대현교회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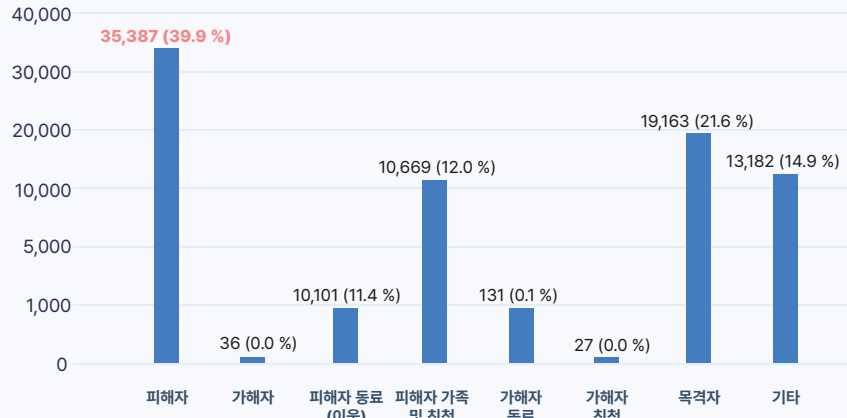


전체 사건 개요 : 88,696건



사건 정보 제공자

합계 88,696



사건 자료 출처

합계 88,696

자체 인터뷰 78,213 (88.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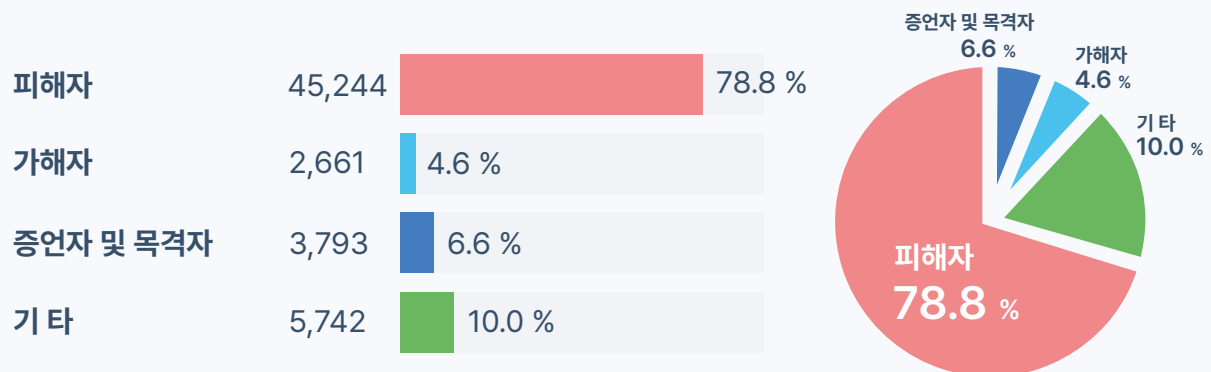
- 수기 혹은 출판물 5,032 (5.7 %)
- 신문 혹은 발행기사 3,611 (4.1 %)
- 설문지 1,264 (1.4 %)
- 그 외 576 (0.6 %)

*그 외 : 편지 57건 (0.1%), 정부의 언론발표 1건 (0.0%), TV, 라디오 1건 (0.0%), 번역된 문서 48건 (0.1%), 기타 469건 (0.5%)

전체 인물 개요 : 57,440건

인물 유형

합계 57,440



피해자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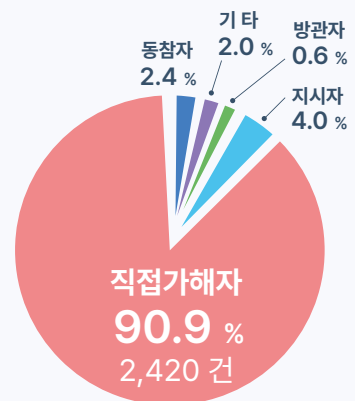
합계 **45,244**

사 망	13,858	30.6 %
상 해	193	0.4 %
실 종	1,776	3.9 %
체포 후 석방·탈출	1,415	3.1 %
체포되어 수감중	2,706	6.0 %
탈주자 신분	136	0.3 %
도피를 중단하고 정착	10,293	22.7 %
기타·미상	14,867	3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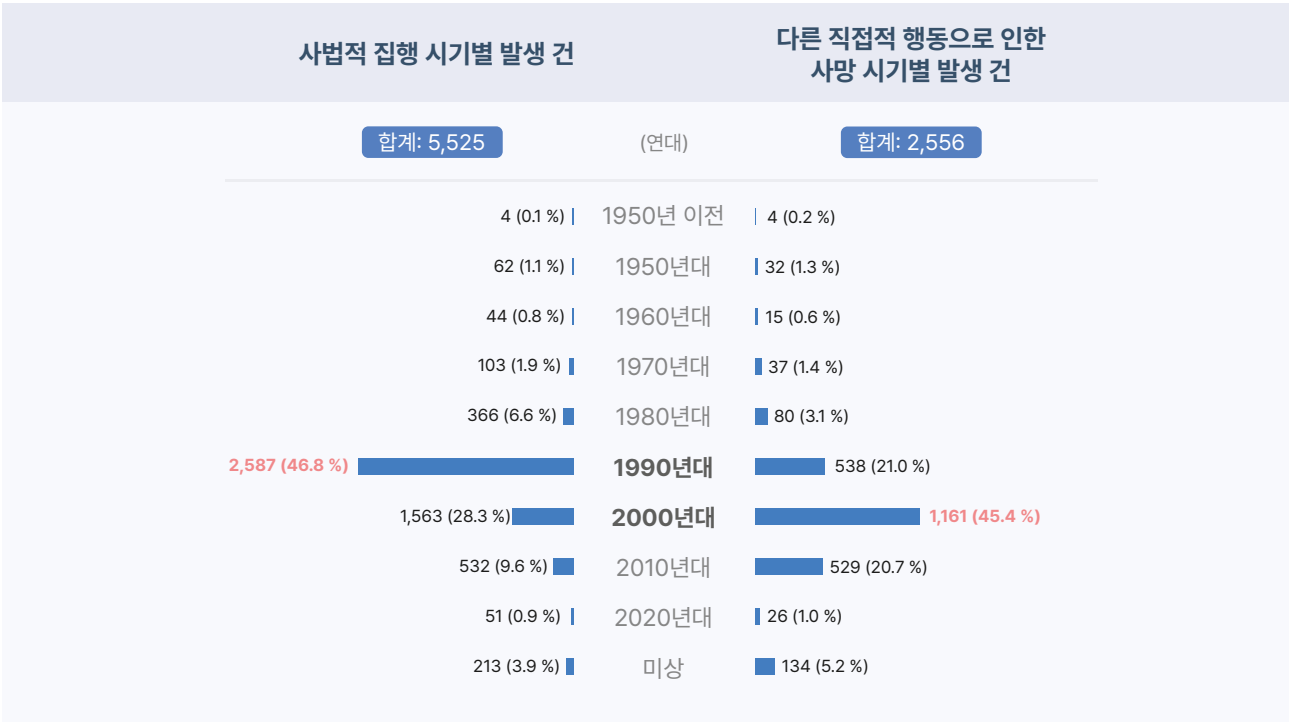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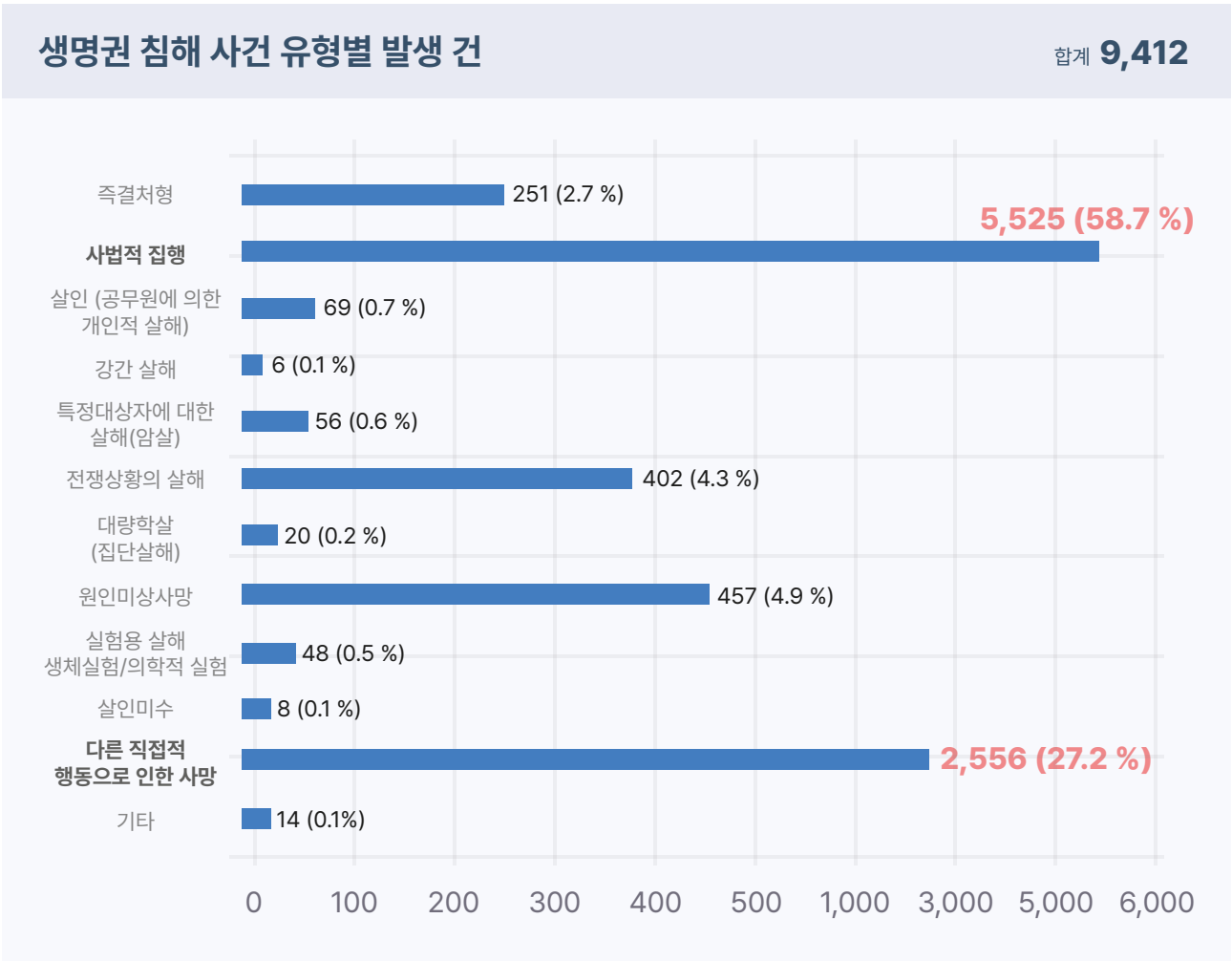
가해자 유형 및 개입 방식

합계 **2,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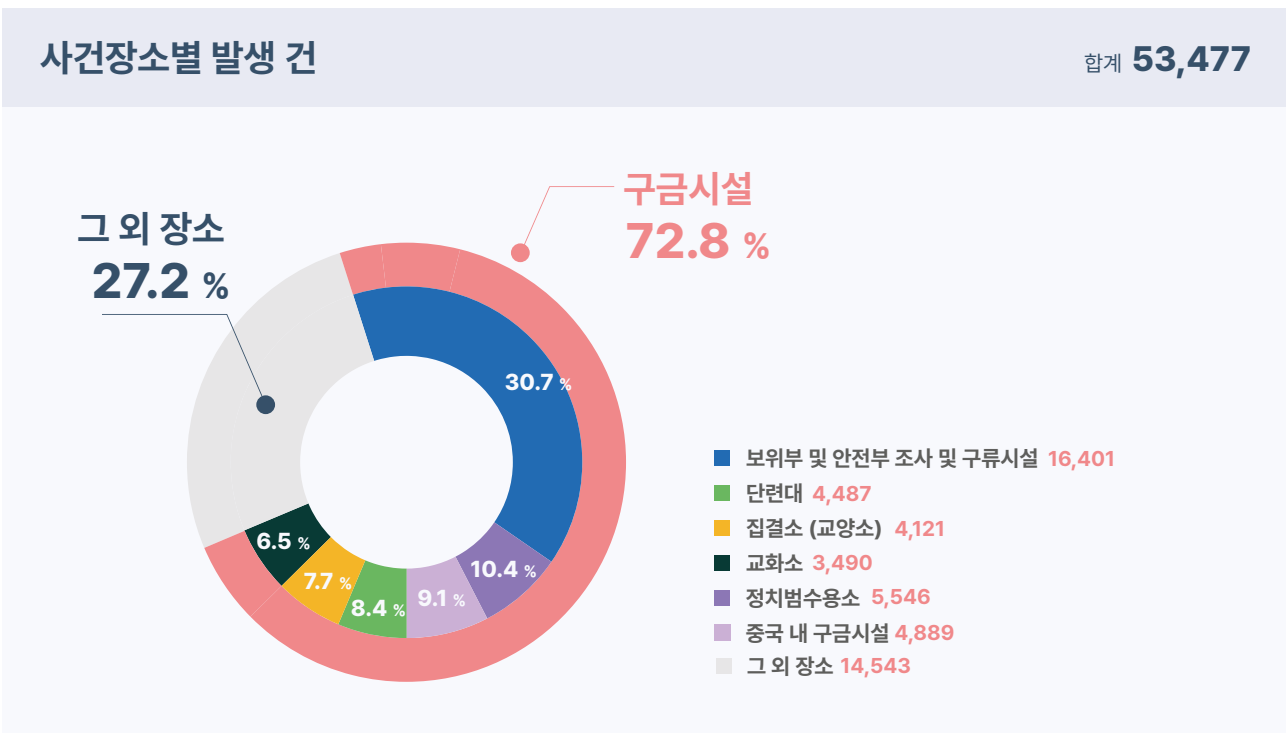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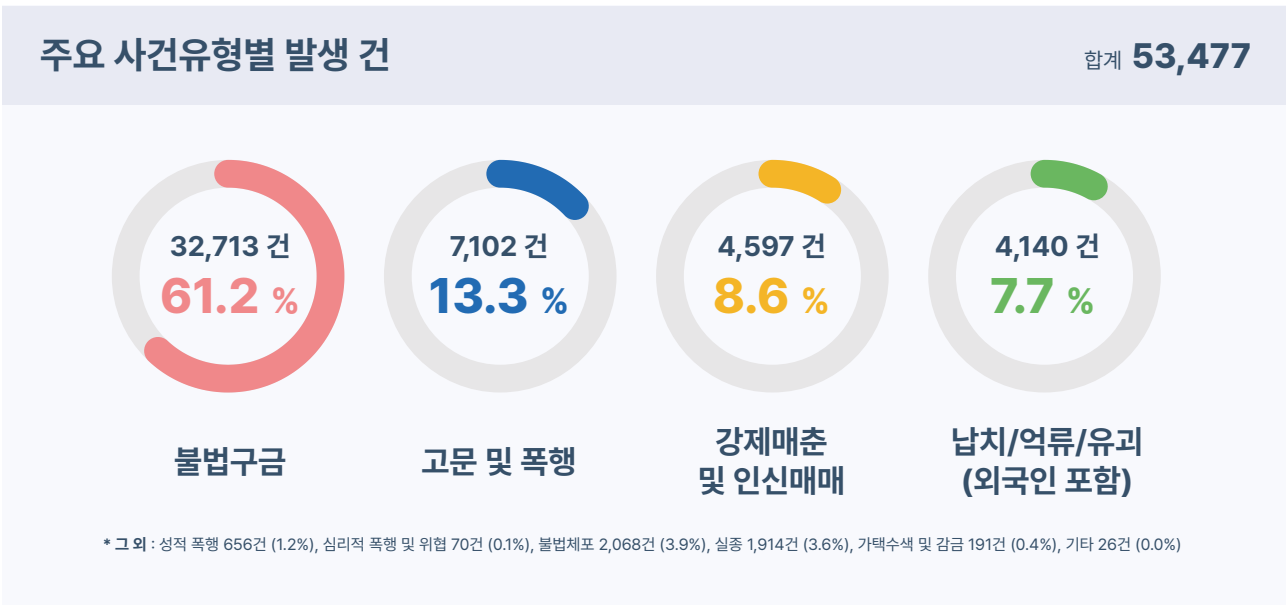
정부기관	2,088	78.5 %
개 인	569	21.4 %
기 타	4	0.2 %



1. 생명권 : 9,41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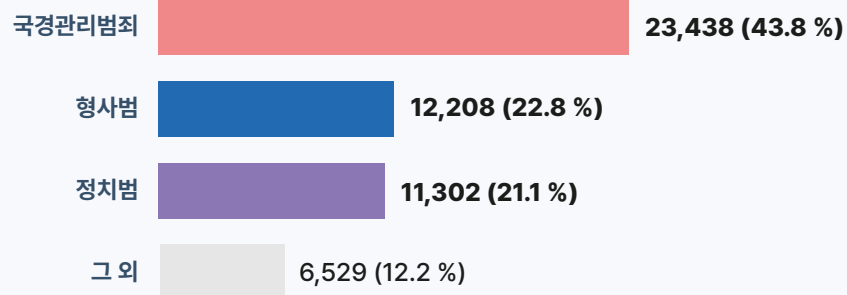


2.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 53,477건



사건원인별 발생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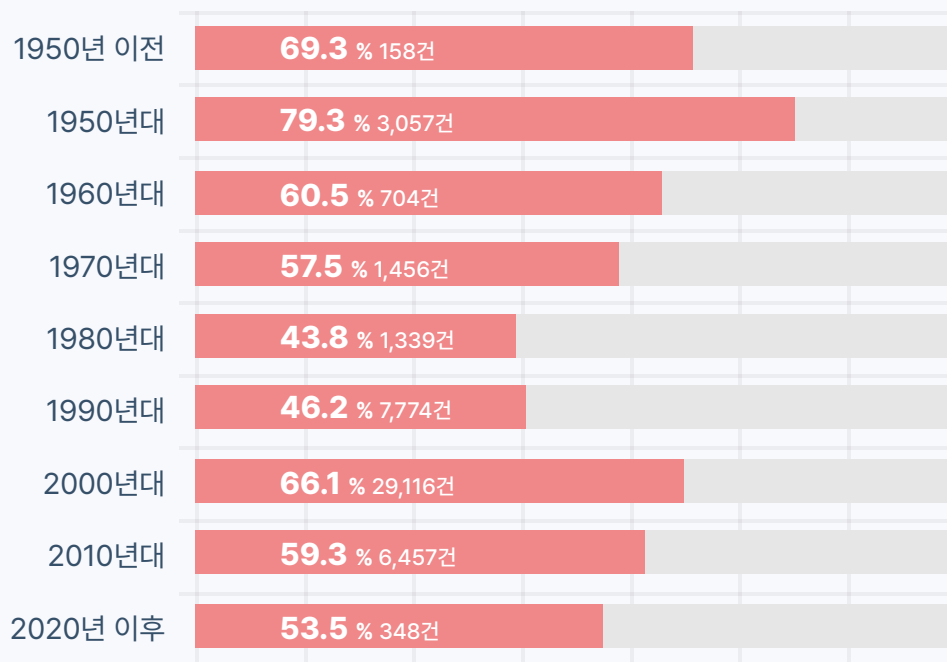
합계 **53,477**



* 그 외: 경제범 454건 (0.8%), 생활사범 1,345건 (2.5%), 연좌제 2,473건 (4.6%), 기타 511건 (1.0%), 미상 1,746건 (3.3%)

시기별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발생률 (전체 DB사건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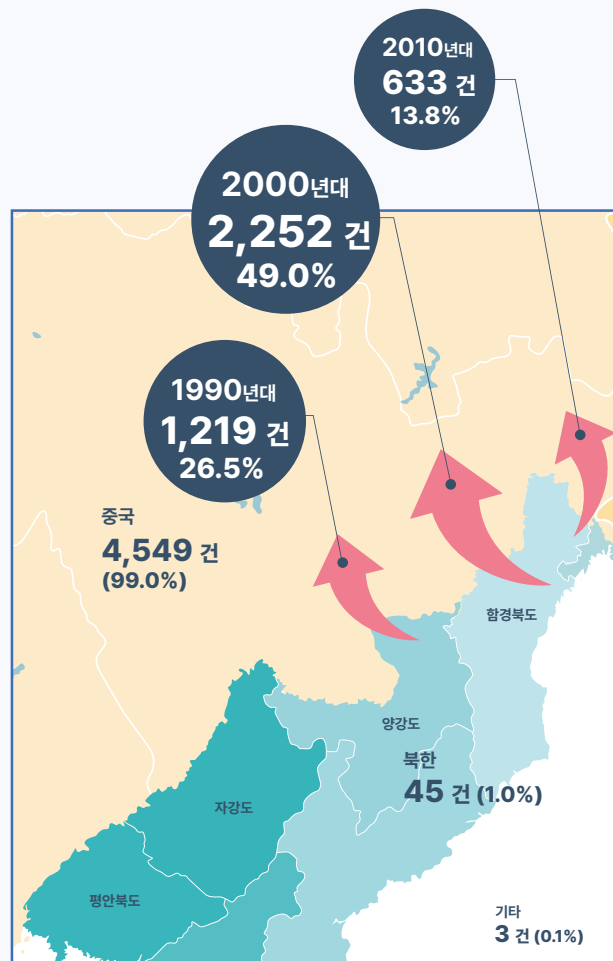
합계 **53,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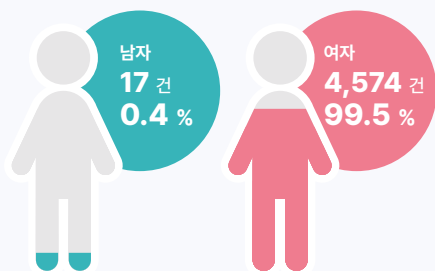
* 미상 3,068건

강제매춘 및 인신매매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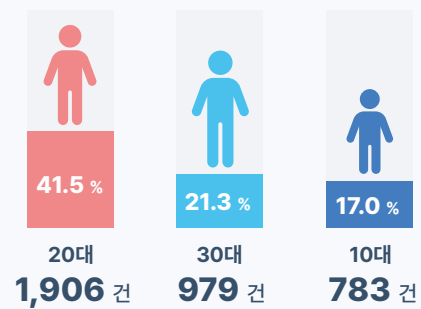
합계 **4,597**



피해자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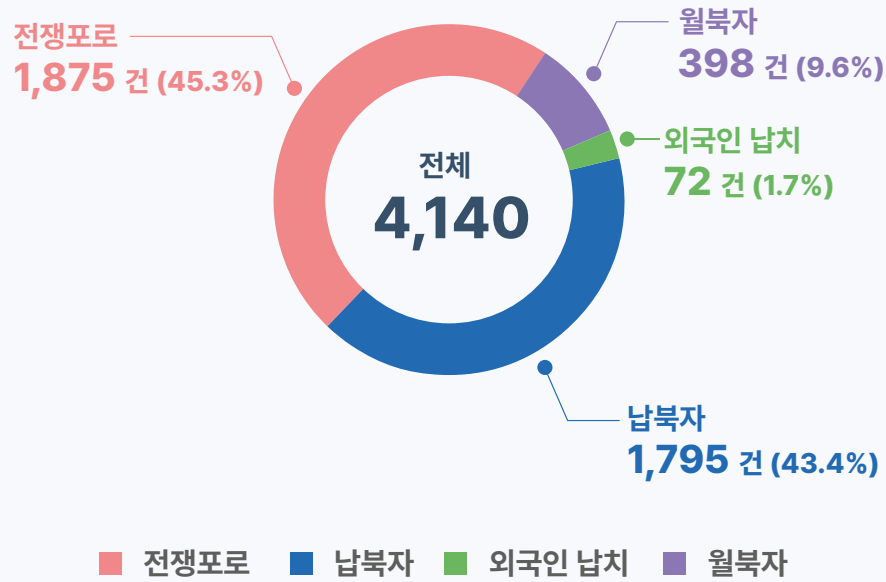


피해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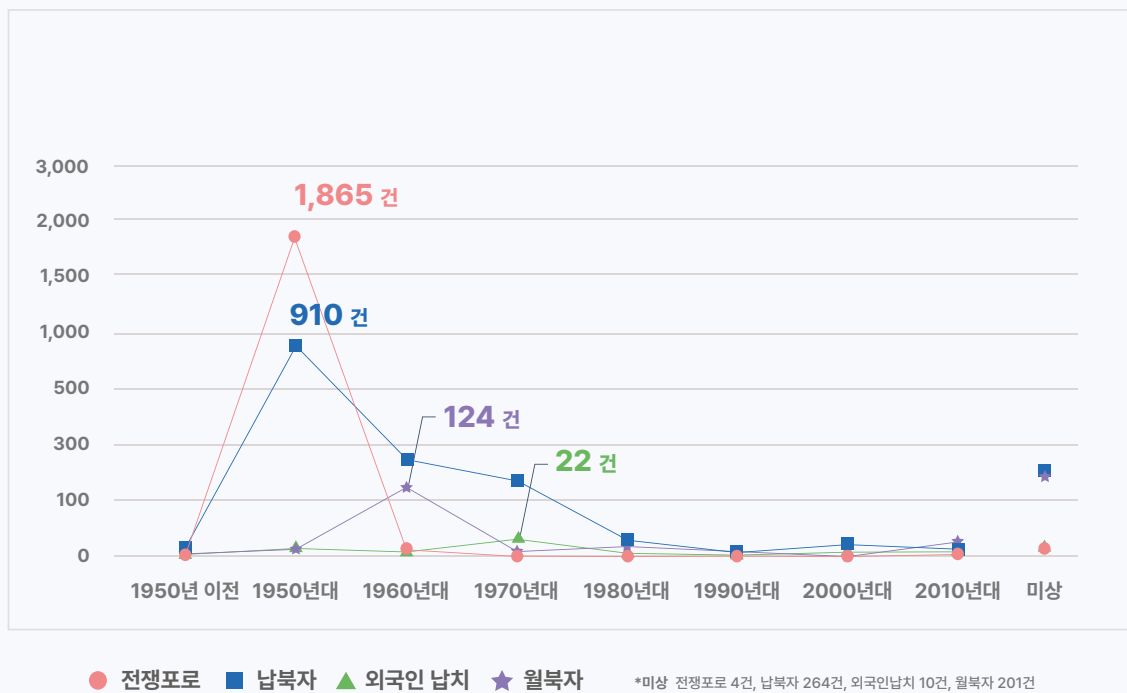


납치/억류/유괴(외국인 포함) 사건 세부 유형별 발생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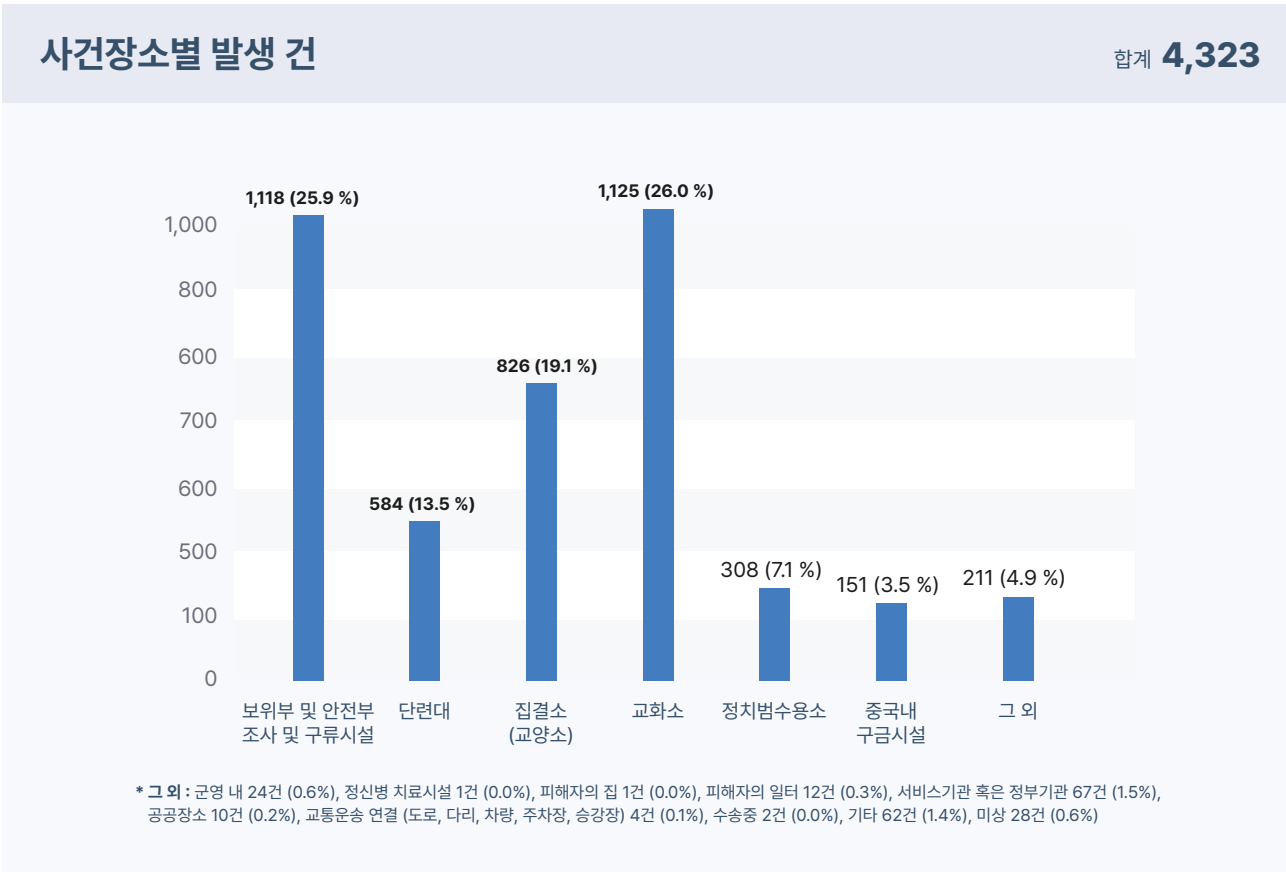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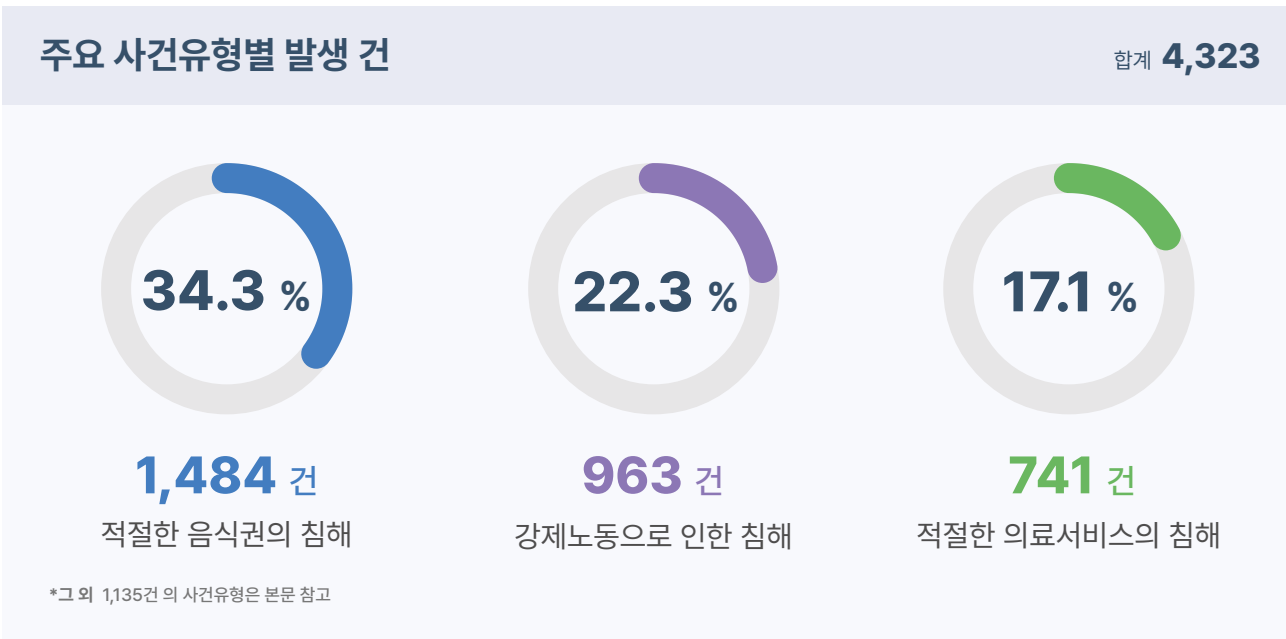
합계 4,140



납치/억류/유괴(외국인 포함) 사건 시기별 발생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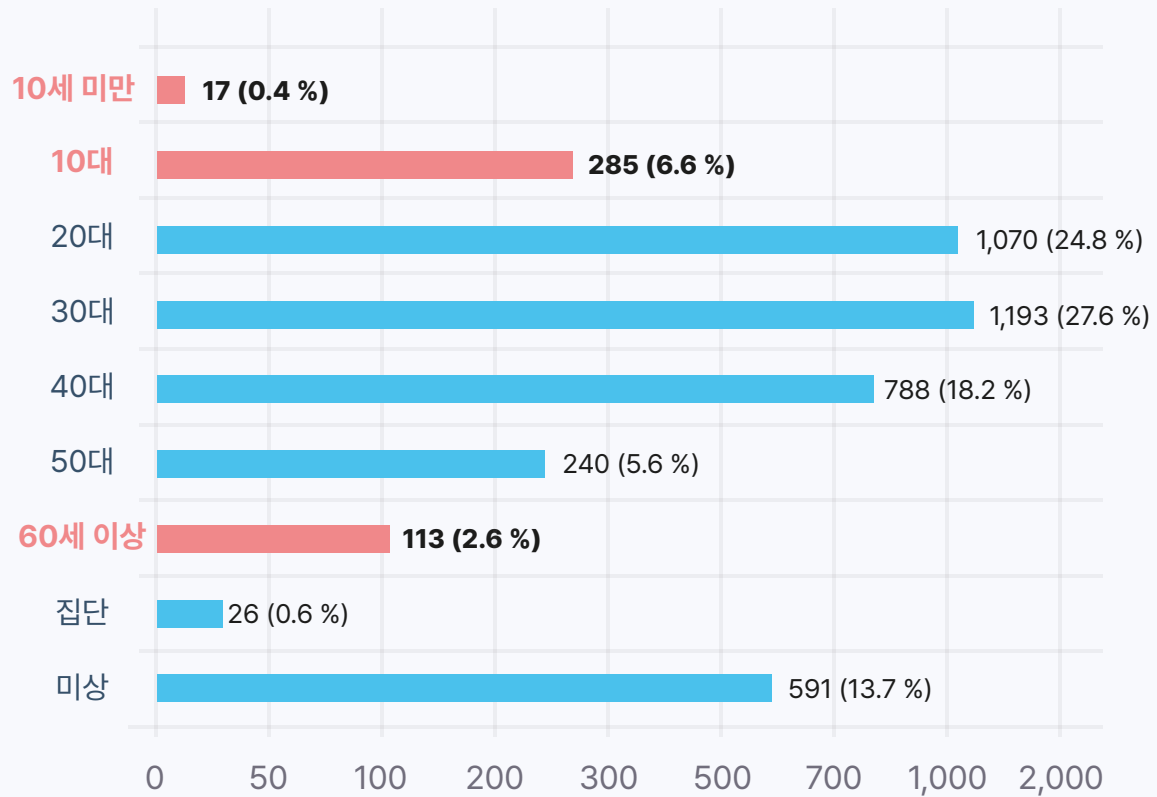


3.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 4,32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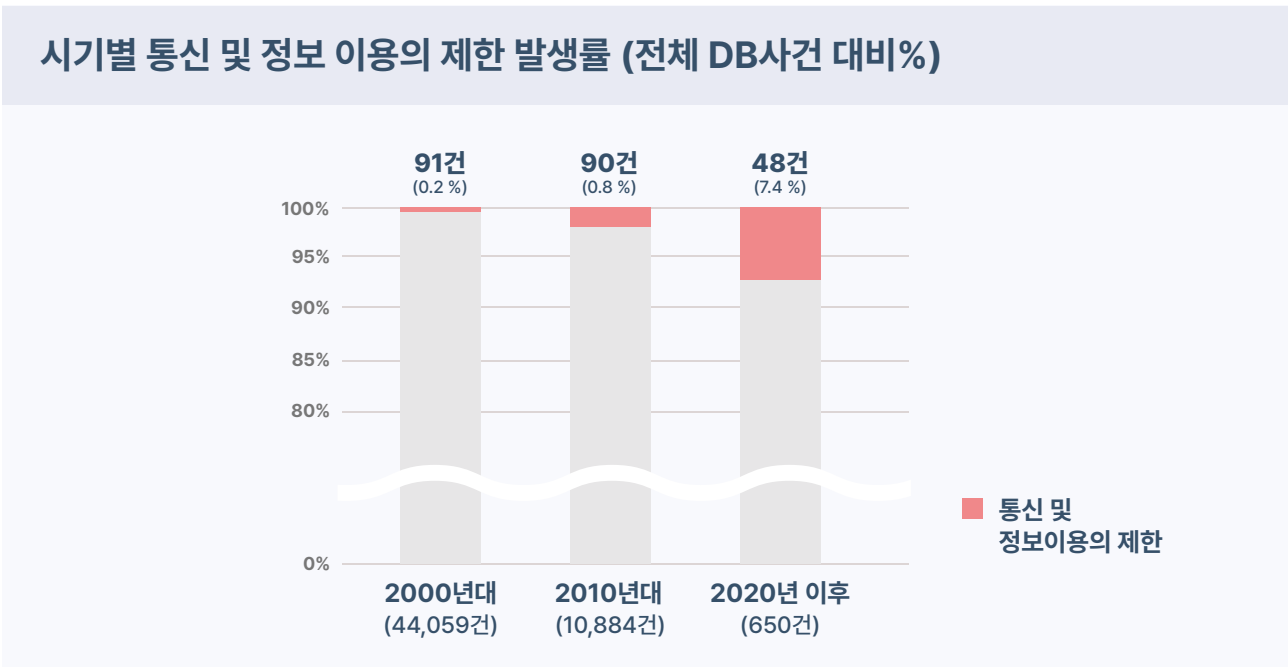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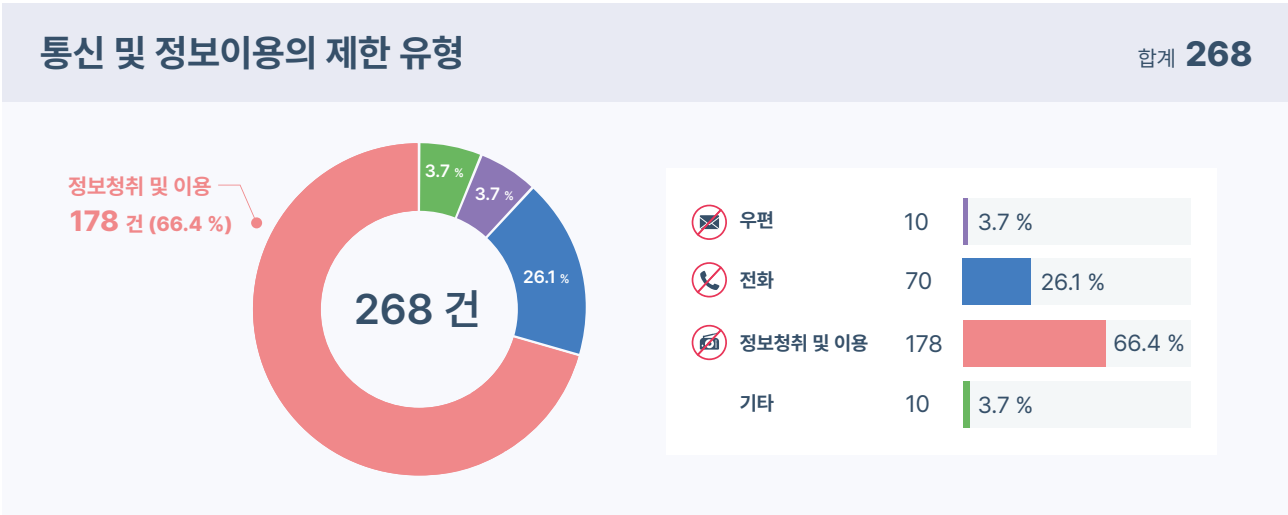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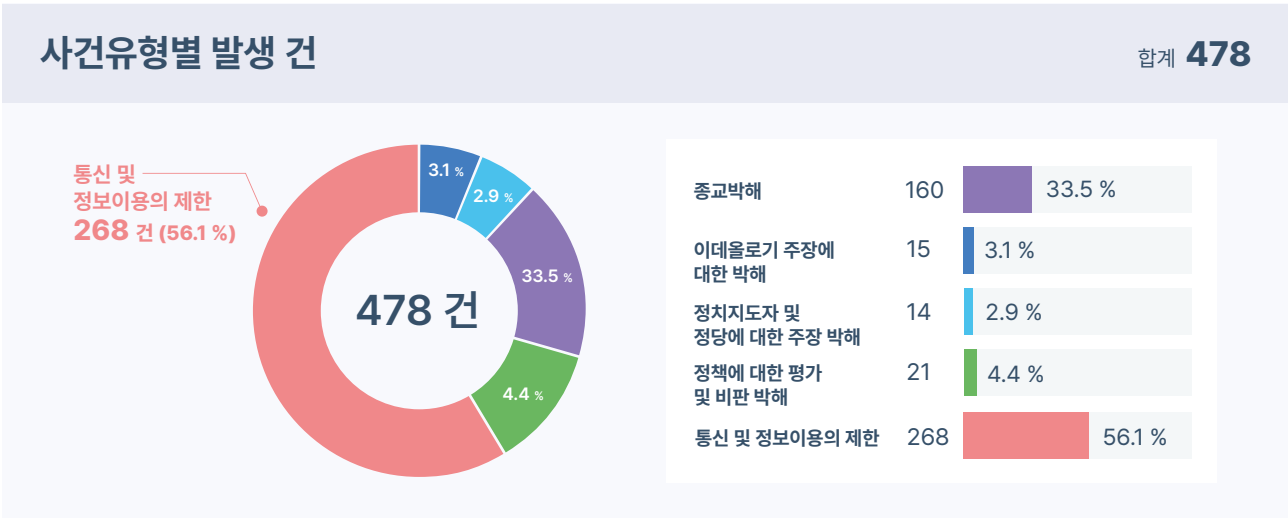


연령대별 발생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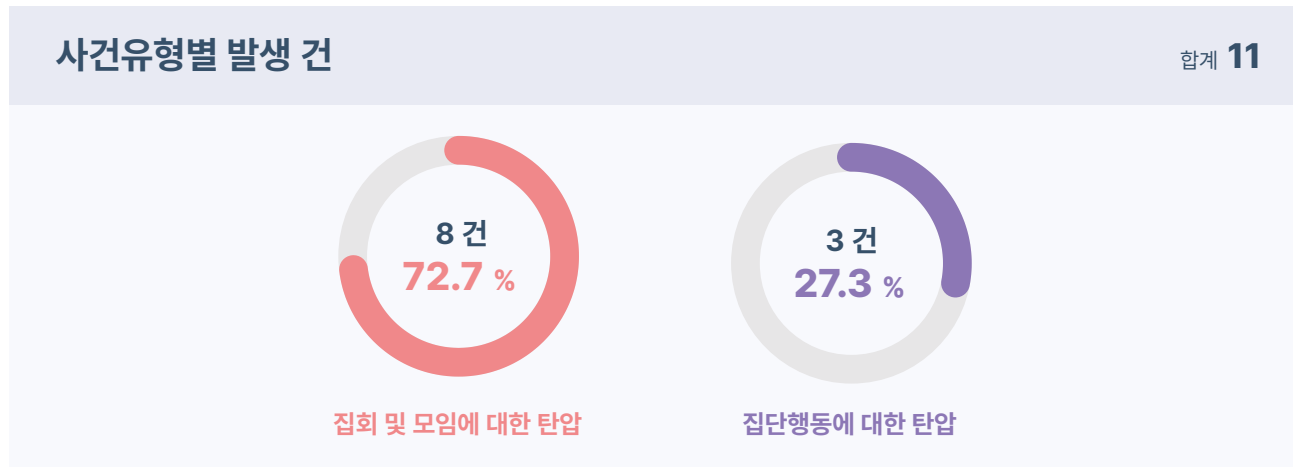
합계 **4,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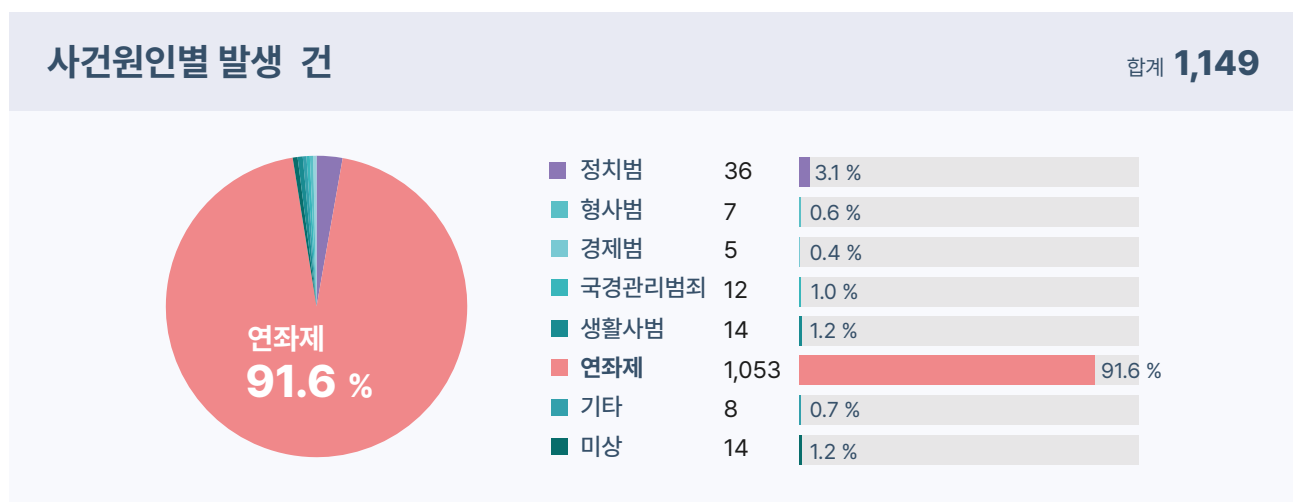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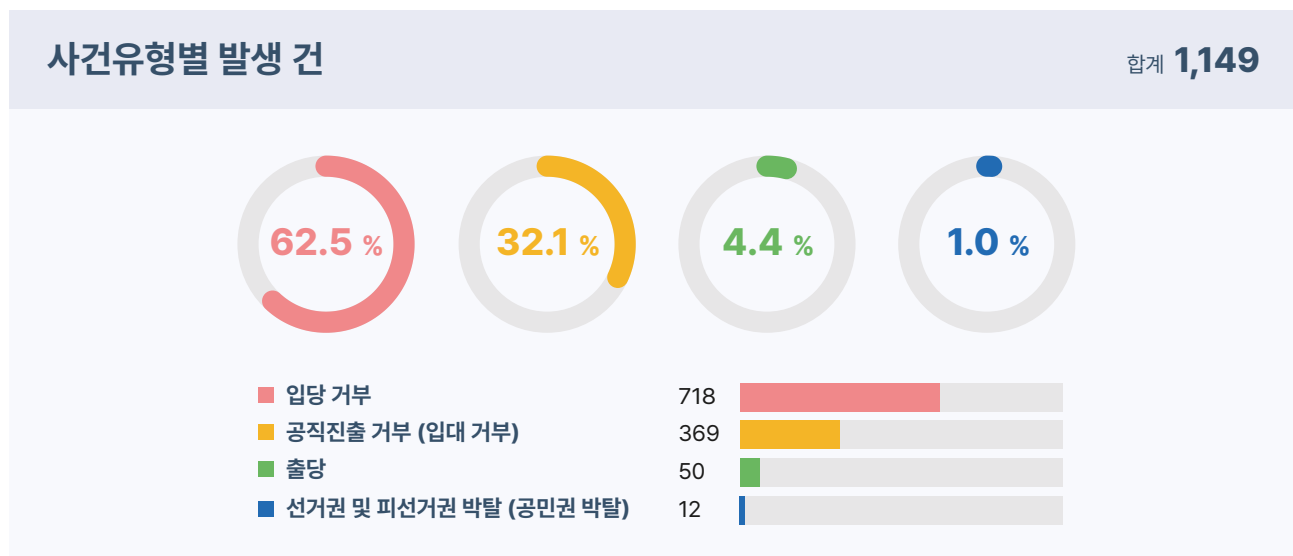
4. 신념 및 표현의 권리 : 47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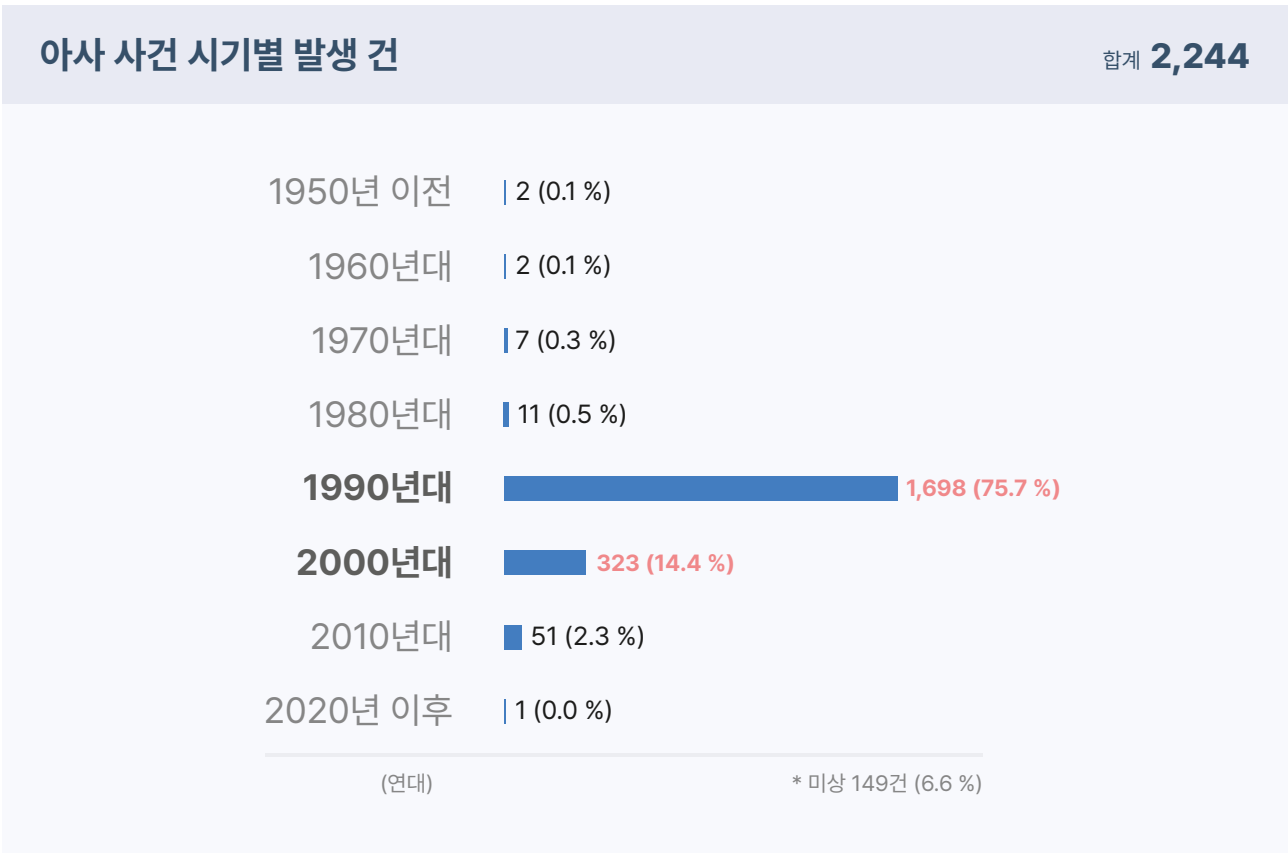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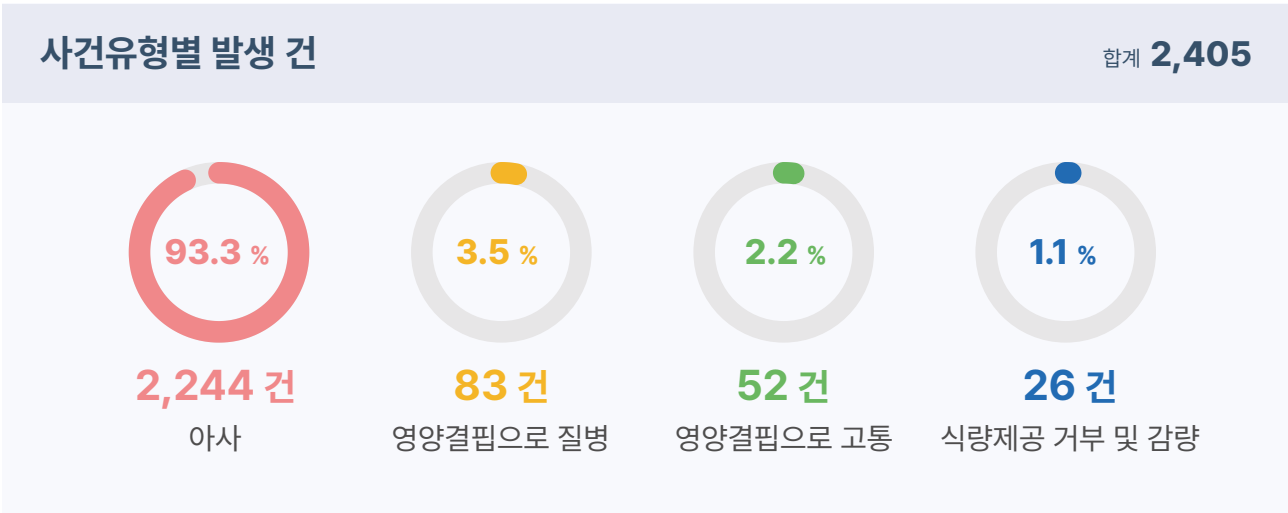
5. 집회 및 결사권 : 1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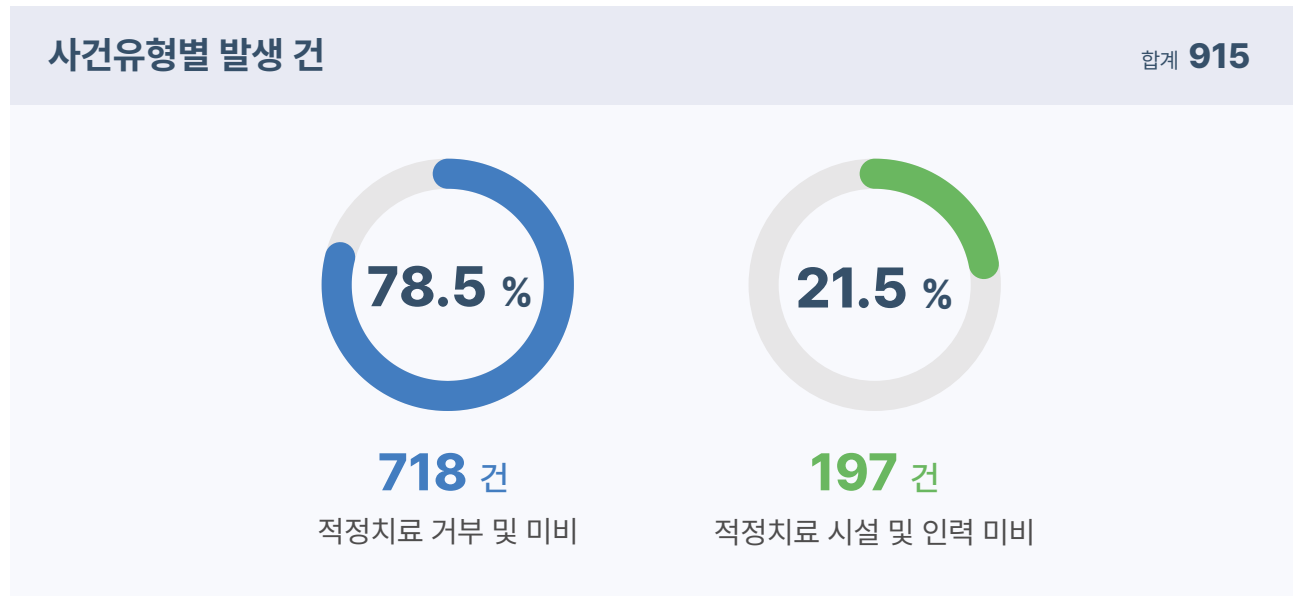
6. 정치적 참여권 : 1,14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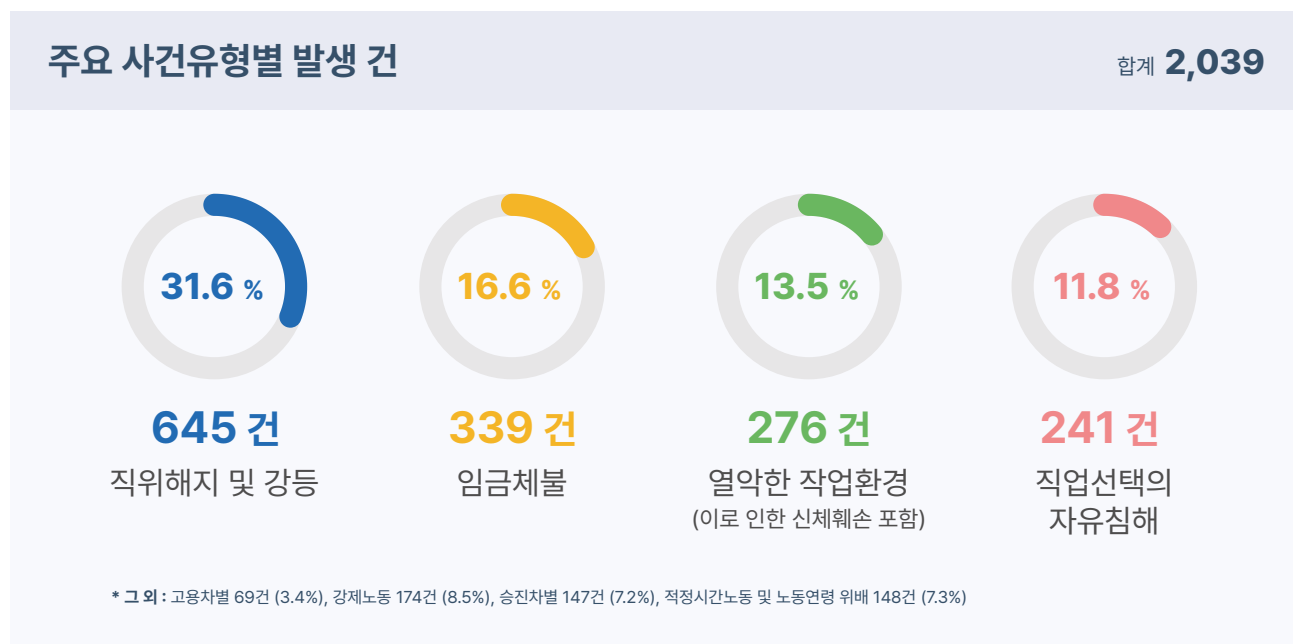
7. 생존권 : 2,405건



8. 건강권 : 91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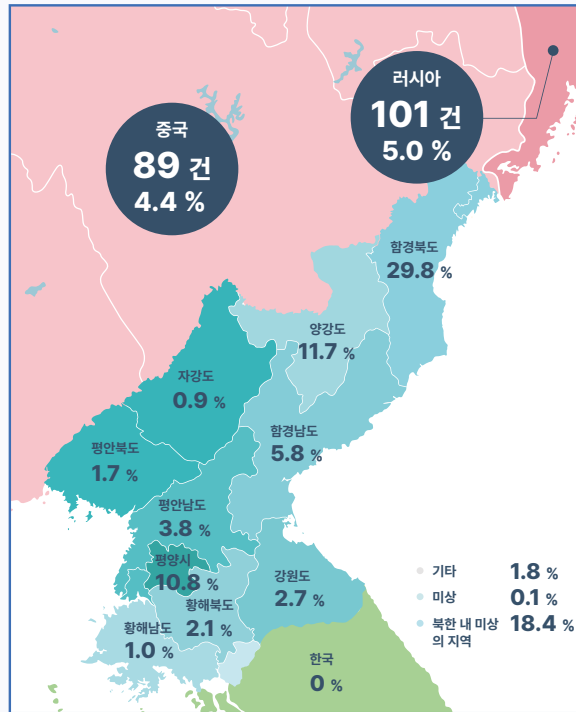


9. 노동권 : 2,039건



노동권 침해 사건 지역별 발생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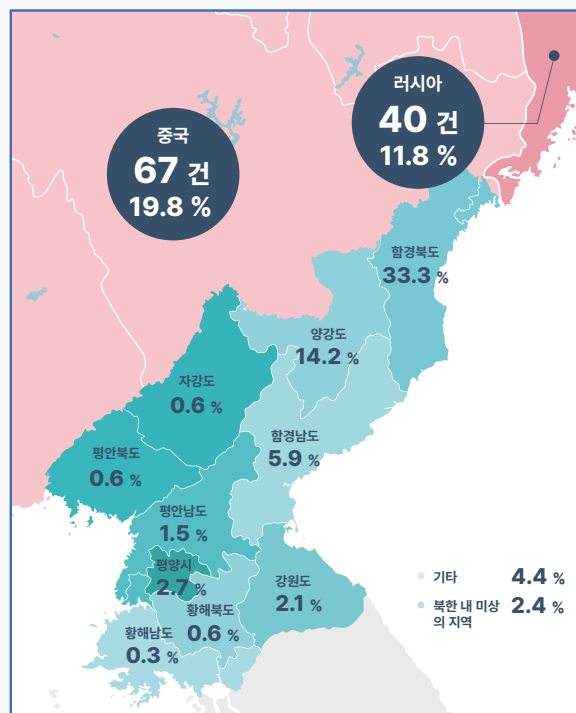
합계 **2,039**



평양시	220 (10.8 %)
함경북도	608 (29.8 %)
함경남도	118 (5.8 %)
양강도	238 (11.7 %)
자강도	18 (0.9 %)
평안북도	35 (1.7 %)
평안남도	77 (3.8 %)
황해북도	43 (2.1 %)
황해남도	21 (1.0 %)
강원도	55 (2.7 %)
한국	1 (0.0 %)
중국	89 (4.4 %)
러시아	101 (5.0 %)
기타	37 (1.8 %)
미상	3 (0.1 %)
북한 내 미상의 지역	375 (18.4 %)

임금체불 사건 지역별 발생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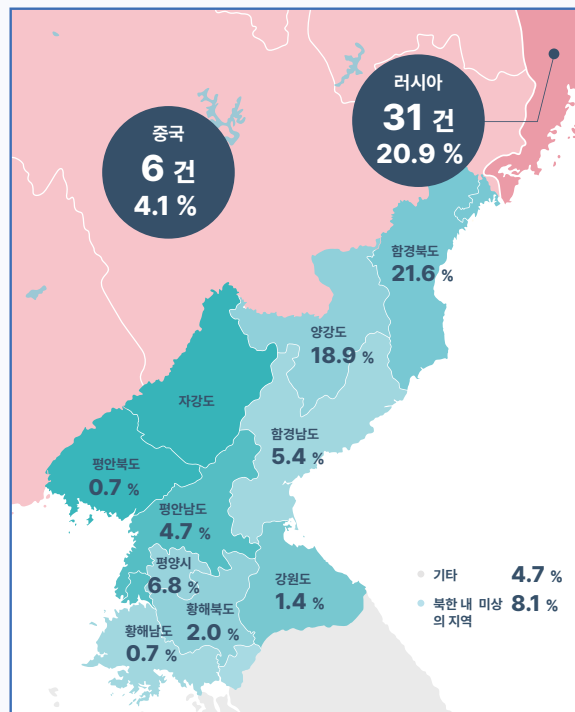
합계 **339**



평양시	9 (2.7 %)
함경북도	113 (33.3 %)
함경남도	20 (5.9 %)
양강도	48 (14.2 %)
자강도	2 (0.6 %)
평안북도	2 (0.6 %)
평안남도	5 (1.5 %)
황해북도	2 (0.6 %)
황해남도	1 (0.3 %)
강원도	7 (2.1 %)
중국	67 (19.8 %)
러시아	40 (11.8 %)
기타	15 (4.4 %)
북한 내 미상의 지역	8 (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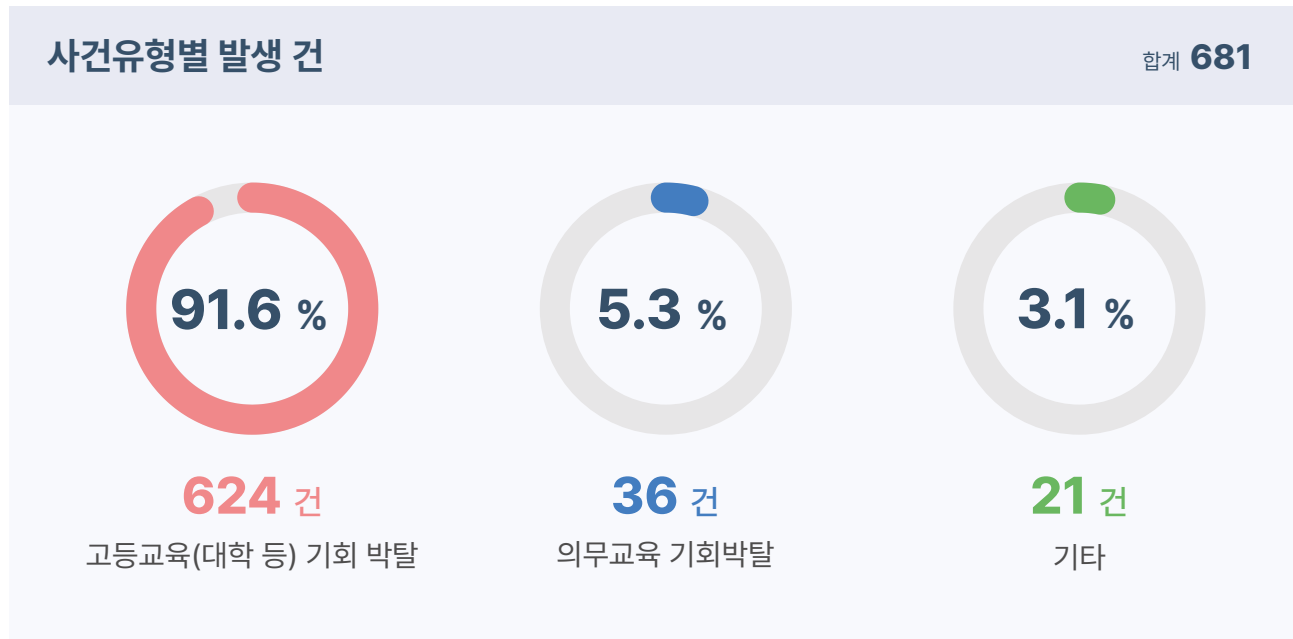
적정 노동시간 및 노동연령 위배 사건 지역별 발생 건

합계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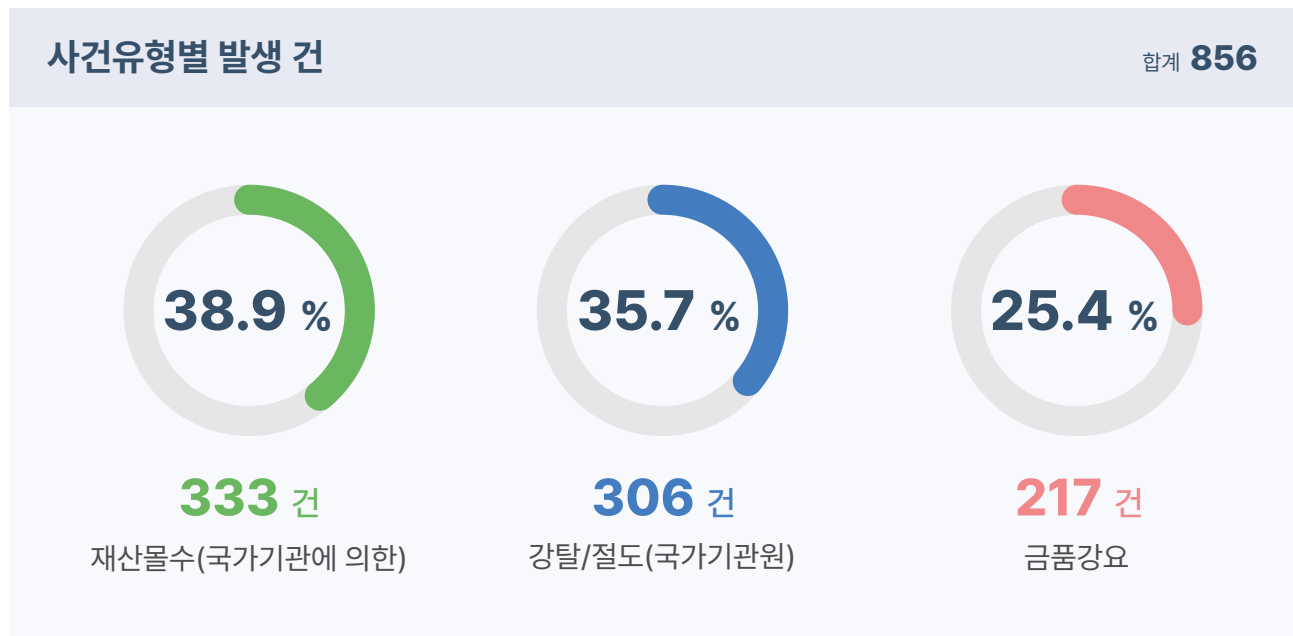


평양시	10 (6.8 %)
함경북도	32 (21.6 %)
함경남도	8 (5.4 %)
양강도	28 (18.9 %)
평안북도	1 (0.7 %)
평안남도	7 (4.7 %)
황해북도	3 (2.0 %)
황해남도	1 (0.7 %)
강원도	2 (1.4 %)
중국	6 (4.1 %)
러시아	31 (20.9 %)
기타	7 (4.7 %)
북한 내 미상의 지역	12 (8.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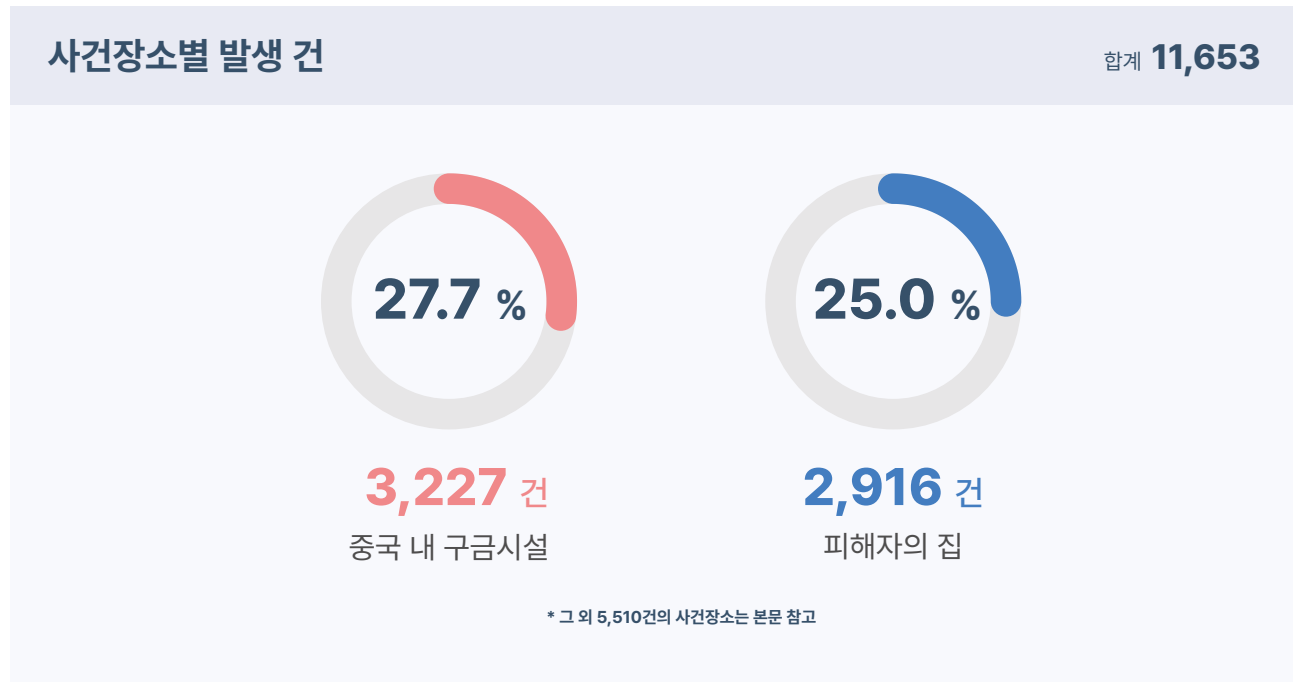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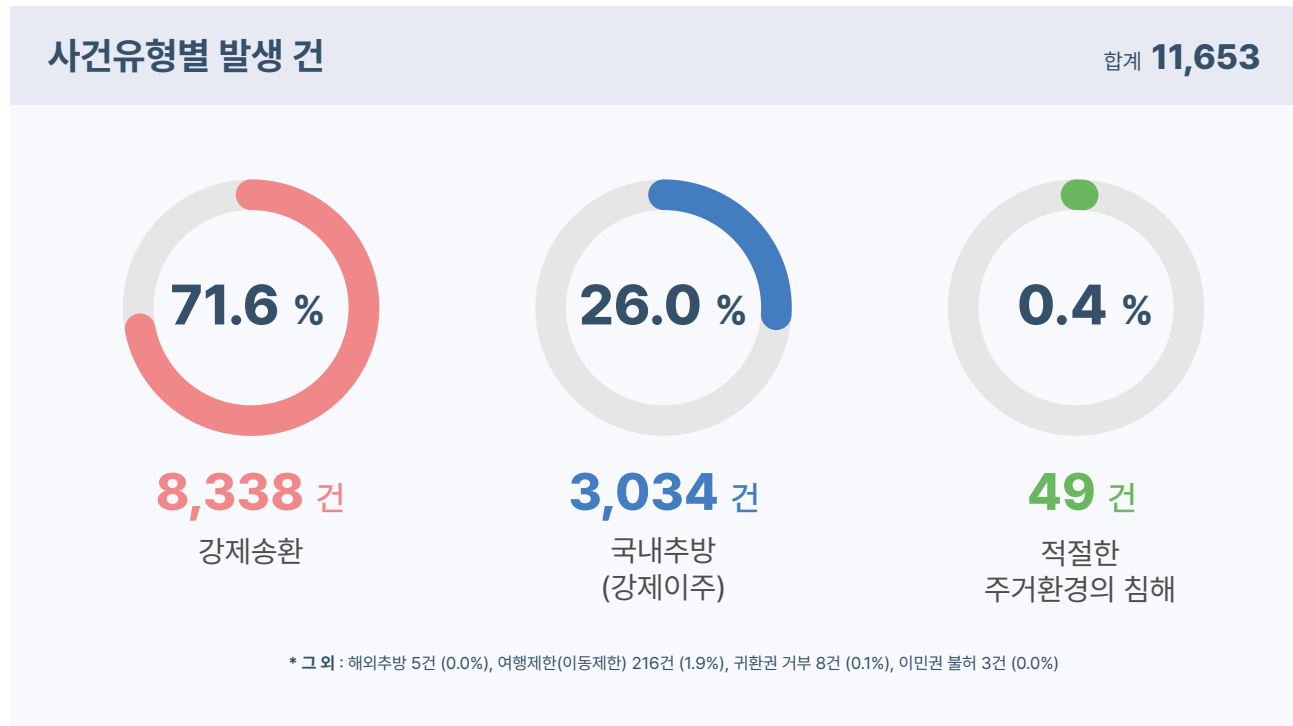
10. 교육권 : 681건



11. 재산권 : 85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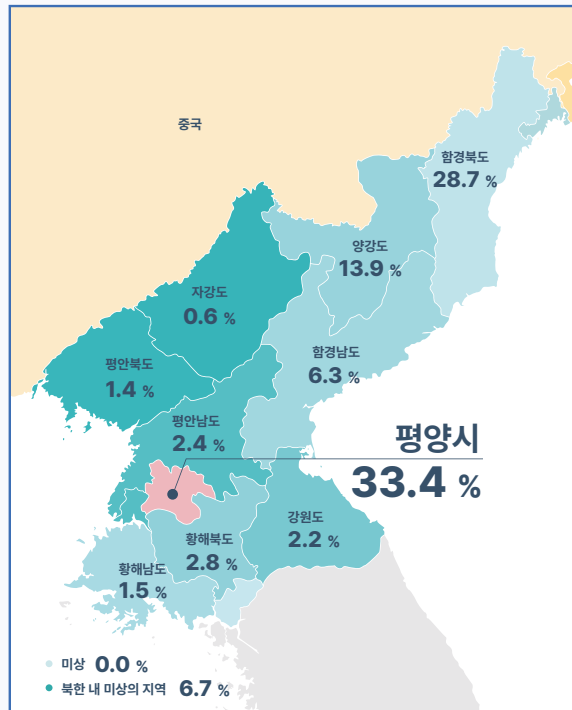


12. 이주 및 주거권 : 11,653건



국내추방 사건 지역별 발생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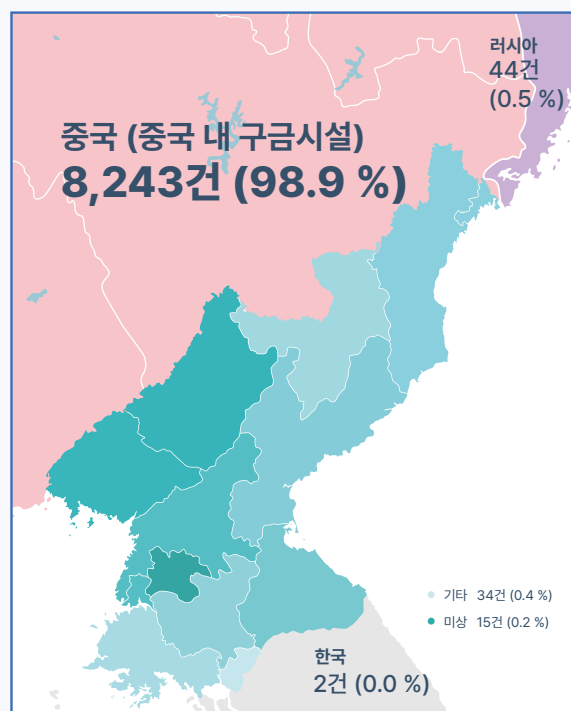
합계 **3,034**



평양시	1,013 (33.4 %)
함경북도	872 (28.7 %)
함경남도	192 (6.3 %)
양강도	423 (13.9 %)
자강도	17 (0.6 %)
평안북도	41 (1.4 %)
평안남도	74 (2.4 %)
황해북도	86 (2.8 %)
황해남도	45 (1.5 %)
강원도	67 (2.2 %)
미상	1 (0.0 %)
북한 내 미상의 지역	203 (6.7 %)

강제송환 사건 지역별 발생 건

합계 **8,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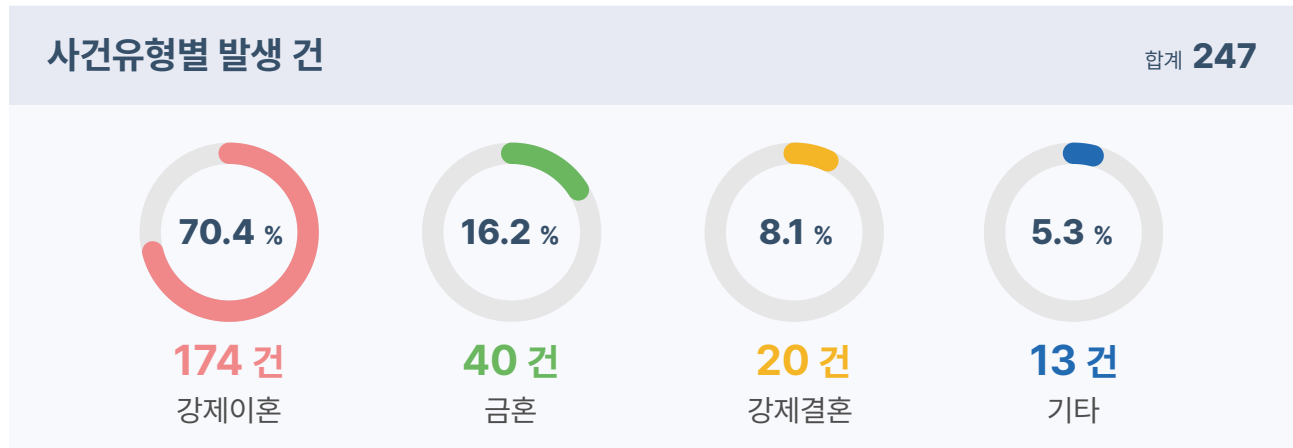
<강제송환 후 집결소까지의 주요 구금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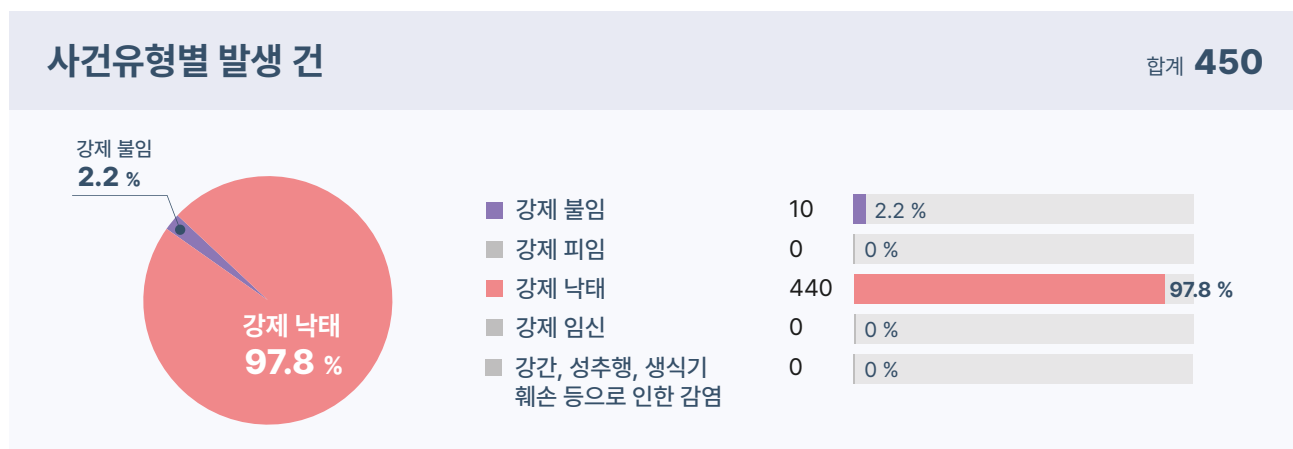
<도문변방대-온성군 보위부-청진시 집결소 강제송환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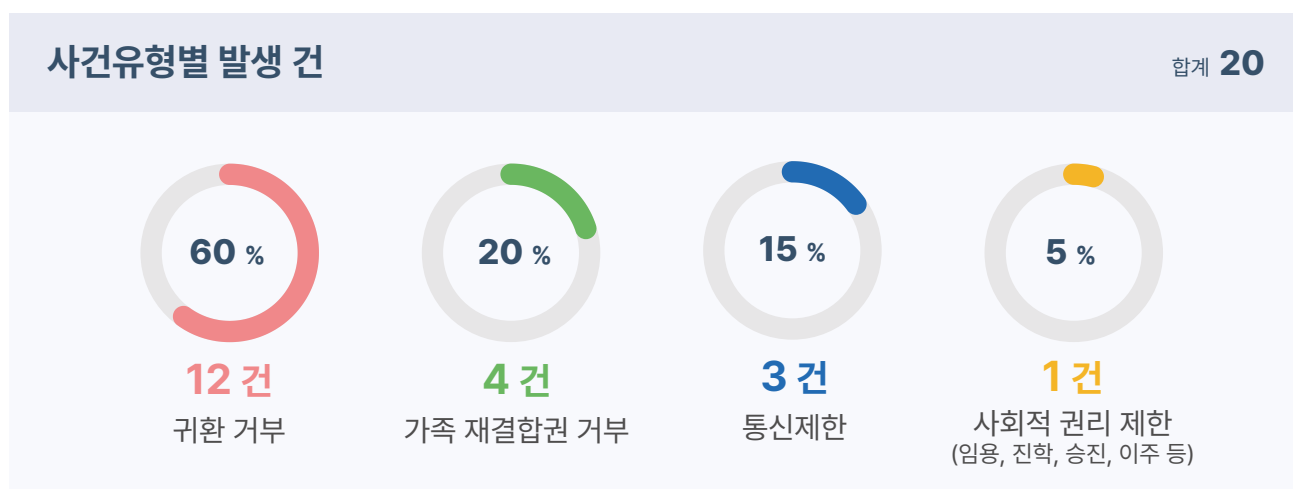
13.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 24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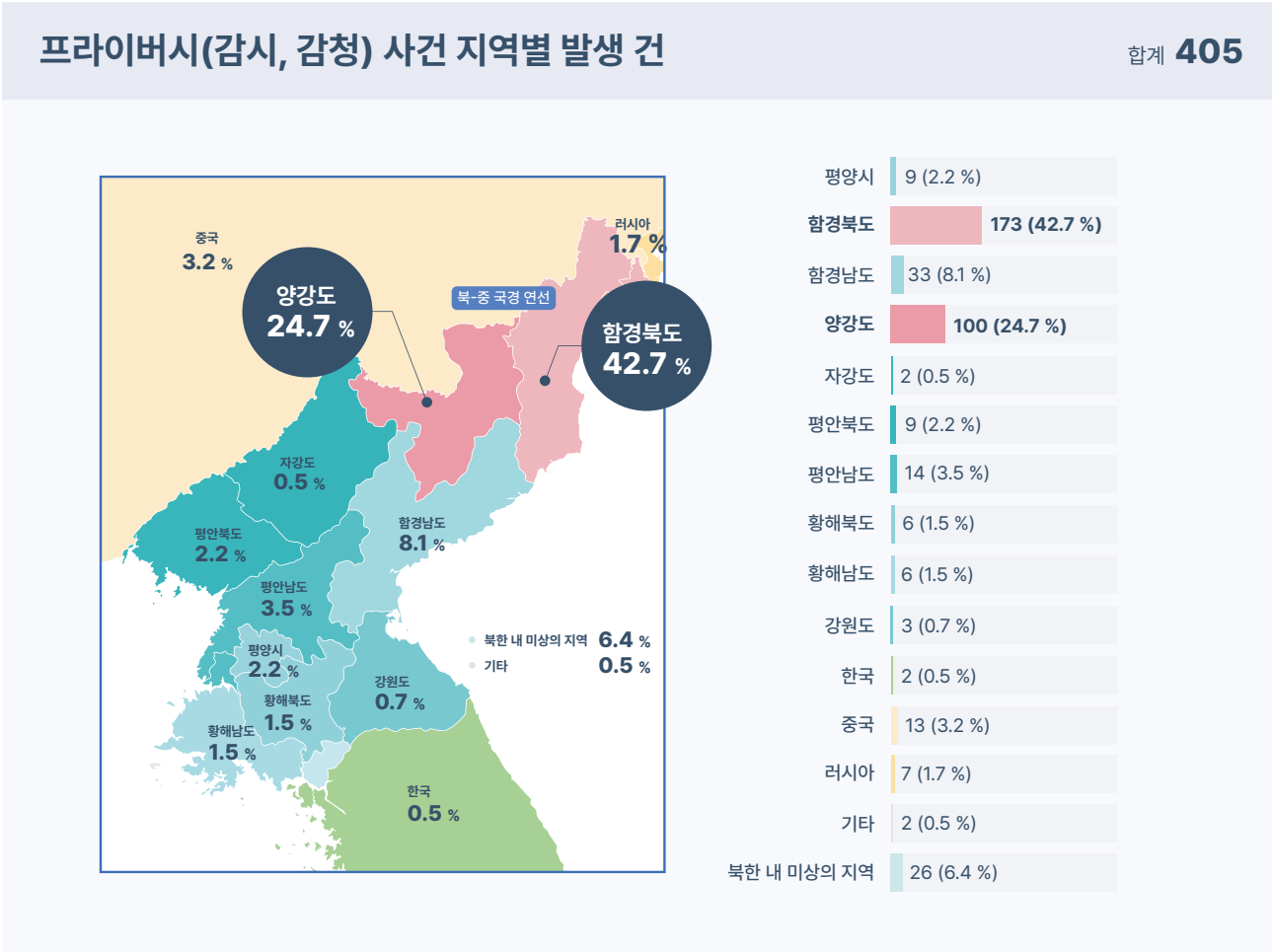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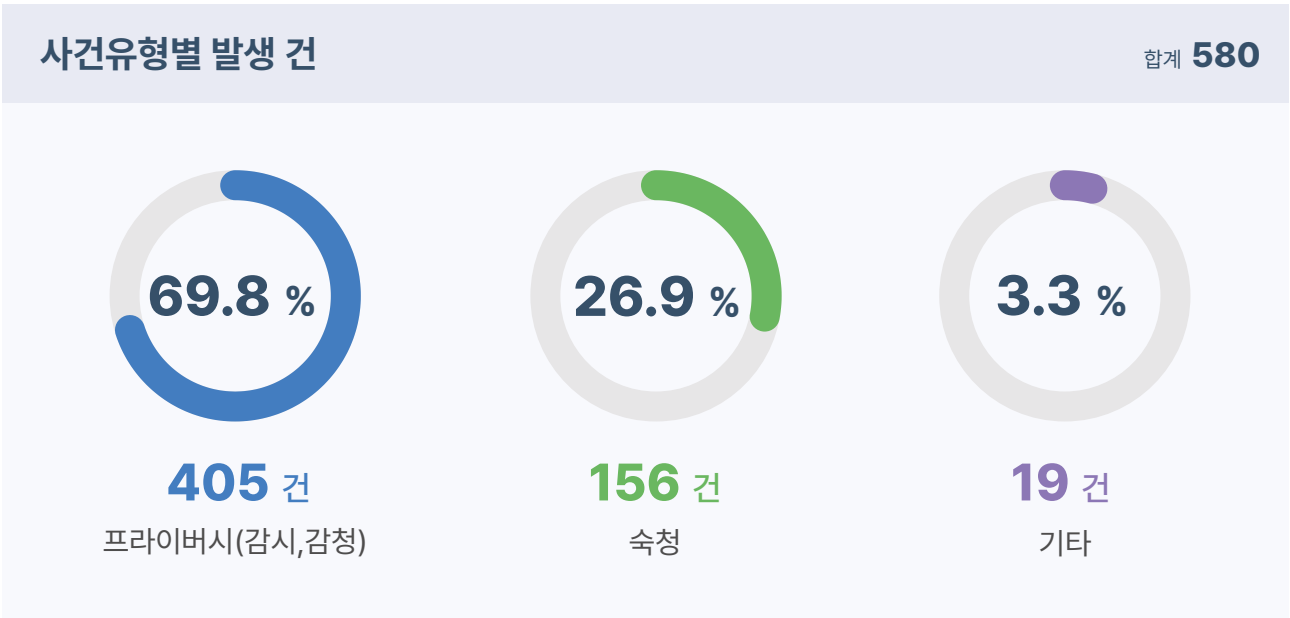
14. 재생산권 : 450건



15. 외국인 권리 : 20건



16. 기타 : 580건



MEMO

MEMO

MEMO

MEMO
